

I. 정정보도청구사례

’87년 대통령 선거시 신청인 발언의 요지는
유세장에서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지역
감정을 표출한 김용태 의원 발언과는 전혀 다르다는
신청인 주장이 사실에 반한다 할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0. 7. 3.자 판결(90나4848)

대법원 1991. 1. 15.자 판결(90다카25468)

事實概要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상원 대법관)는 1991년 1월 15일 전 건설부장관 이 씨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되는 원문보도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며 동아일보사가 낸 상고를 기각,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의 발언 요지는 선거 유세장에서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는 지역 감정을 표출한 김용태 의원 발언과는 전혀 다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李씨는 東亞日報 1989년 8월 8일자 14면 『제2 싸늘이 발언 분노의 소리』 제하의 기사에서 「전북도민들은 金 의원의 발언을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李 전 건설부 장관의 싸늘이 발언에 이은 제2의 싸늘이 발언으로 간주하고…」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자, 「대통령 선거 당시 발언은 선거유세장에서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金의원의 발언과는 다르다」며, 당시 한양여전 김 강사와 평민당이 자신의 발언을 문제삼아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신을 고발한 일이 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했다(89서울중재53).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검찰의 사실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일 뿐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주장, 중재 불성립 되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다(국내언론관계판례1집 185~189면 참조).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유태현 부장판사)는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던 것이다.

2審 判 決 文

사 건 : 90나4848 정정보도게재

신청인, 피항소인 : 이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피신청인, 항소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병 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성 남

변론종결 : 1990. 6. 5.

제1심판결문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2. 29. 선고 89카 52256판결

주 문 :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의 제14면 좌측 상단에 가로 8센티미터 세로 5단의 크기로 제목은 0호 고딕체 활자로 하여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심,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 1. 성립에 다툼 없는 소갑제7호증(신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9. 8. 8.자 동아일보 제14면 기사란에 『제2 싸뜩이 발언 분노의 소리』라는 제목과 『김용태 의원 발언 전북도민 반응』이라는 소제목 아래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당정예산관계자 간담회에서 전라북도 90년도 예산에 관하여 특별대책을 세워달라는 지구당 위원장들의 요청에 대하여 ‘전원 야당을 뽑았으니 뜨거운 꼴을 한번 봐야

할 것'이라고 전라북도에서의 총선 패배에 대한 여권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전남 북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면 평민당이 생색을 낼 우려가 있다' '지역개발이 그렇게 급하면 민정당 후보를 좀 뽑아줬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전북도민들은 이러한 김용태의 발언을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 전 건설부 장관의 싹쓸이 발언에 이은 <제2의 싹쓸이 발언>으로 간주하고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지역감정을 개탄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은 전북도민들의 반응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단 그 내용이 언론기관인 동아일보가 지득하여 이를 신문지상에 공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신청인이 지역감정을 나타내는 문제된 소위 「싹쓸이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것이 김용태 의원의 위 발언들과 같은 취지라는 내용인 이상 이 사건 기사는 이미 동아일보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기사가 김 의원의 발언에 관한 기사 속에 포함된 것이지만 신청인 및 신청인의 언행이 언급되어 있는 이상 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동아일보에 공표된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첫째, 가사 이 사건 기사가 신청인의 이 사건 발언에 관한 것이고 신청인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이 위 전체 기사내용의 본질적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7단 크기로 김용태 의원의 발언요지 및 전북도민의 반응을 보도하는 기사 속에 1단 7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기사가 그 분량에 있어 위 전체 기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이 정정보도문으로써 이 사건 기사를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사건 발언은 위 김용태 의원의 발언과는 같은 취지가 아니었다는 것인 만큼 이 사건 기사의 기본 취지에 대한 반론이라 할 것이어서, 반론내용이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발언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언행은 그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에 관한 보도 및 비판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니 이 사건 기사가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한 이에 대

하여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의 의의는 피해자에게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리기 위한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함이 없이 신속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언론사측에 대하여도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그 진실여부를 소상하게 가려내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면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이 저절로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의가 제기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려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건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가능케 하는 데에 있으므로 가사 당시 건설부 장관이던 신청인의 이 사건 발언이 공익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관한 보도 및 평가가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본래의 발언 취지와 달리 독자를 오도하여 보도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권까지 봉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5호증(불기소사건기록), 소을제2호증의 11(피의자 신문조서), 소을제2호증의 15, 16(각 진술서), 소을제2호증의 17, 18(각 자술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중인 김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선거에서의 폭력을 추방하자는 신청인의 이 사건 발언이 지역감정을 표출하는 발언으로 오도되어 신청인 개인에게도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정정보도청구권은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의 보도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셋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부분은「전북도민들」의 항의 중 일부를 인용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보도된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다른 사실적 주장 즉「전북도민들」이 위 김용태 의원의 발언을「제2의 싸늘이 발언」이라고 평가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이 건 청구를 했어야 했는데 이에 관한 주장과 입증에 실패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청구인 자신의 개인적 변명이나 해명을 광고하려는 처사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 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 행사의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청구로서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그 자신의 반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자신의 개인적 변

명이나 해명을 광고하려는 의사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만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를 반박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별지1 기재의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7. 3.

재판장 판사 유 태 현

판사 최 세 모

판사 배 태 연

〈별지 1〉 정정보도문

89년 8월 8일자 동아일보 제14면 기사란에 『제2싸늘이 발언 분노의 소리』 『김용태 의원 발언 전북도민 반응』이라는 제목 아래 「...전북도민들은 김용태 의원의 발언을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 전 건설부 장관의 싸늘이 발언에 이은 <제2의 싸늘이 발언>으로 간주하고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지역감정을 개탄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제된 신청인의 발언(87년 12월 12일자 동아일보 「창」란 보도)은 선거유세장에서의 폭력을 근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김용태 의원의 위 발언과는 그 취지가 같지 아니하므로, 양자를 동일시한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인

〈별지 2〉 신청인이 신청한 정정보도문

동아일보는 1989. 8. 8. 『제2 싸늘이 발언 분노의 소리』 『김용태 의원 발언 전북도민 반응』이라는 제목 아래 「...전북도민들은 김의원의 발언을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 전 건설부 장관의 싸늘이 발언에 이은 제2 싸늘이 발언으로 간주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지역 감정을 개탄했다...」는 요지의 보도를 하였다.

응을 보도한 위 기사까지도 평가 내지 의견진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기사를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이 점에서 소론과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위 기사 중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의 신청인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어서 원문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신청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의 신청인의 발언 요지가 선거유세장에서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지역감정을 표출한 위 김용태 의원의 발언과는 전혀 다르므로 위 기사 중 신청인 관련부분은 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고 기록상 위와 같은 반박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위 반박을 주장하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도 실시한 바와 같이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진실여부를 가려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문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내용을 공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문보도가 허위임을 요하지 않으며 원문보도 내용이 공익에 관련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실시 중에 선거에서의 폭력을 추방하라는 신청인의 발언이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지역감정을 표출하는 발언으로 오도되어 신청인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대목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정정보도청구는 원문보도가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불필요한 대목으로서 판결 결론에 영향이 없는 실시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사실적 주장 및 정당한 이익에 관한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91. 1. 15.

재판장 대법관 김 상 원
대법관 이 회 창
대법관 배 석
대법관 김 주 한

무허가 사설투자자문사 난립에 관한 기사에서 신청인 회사명을 그冒頭에 대표적으로 기재, 피해를 주었다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5. 25.자 판결(89카28984)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5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1990년 5월 25일 주식회사 현대투자연구소가 제일경제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사실에 대한 타인의 논평을 인용한 것에 불과해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며, 신청인의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건 기사가 다수의 사설 투자 자문사를 상대로 한 기사이나, 그 모두에 신청인 회사의 상호를 대표적으로 기재, 그 이후의 기사 내용은 객관적으로 신청인 회사에 대한 기사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신청인이 위 기사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조세금융일보 1989. 4. 11자 9면 『무허가 사설투자자문사 활개』 1989. 4. 16자 1면, 『무허가 사설자문사 난립』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증시가 활황을 보이자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사설투자자문사가 성행하고 있어 주가조작등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투자클럽회원을 모집하는 현대투자연구소등 사설투자 자문사들은 주요경제지에 크게 광고를 내고 있는데 이들 클럽이 사기성이 없다면 그 많은 광고비를 어디에서 충당하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설무허가 자문사의 유형은 여러 경우가 있는데 현대투자연구소등의 경우 신문광고를 통해 증권전문가들이 투자전략을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사실상 10여명 남짓한 사무실을 갖추고 증권사가 자사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를 표지만 바꾸어 보급하고 2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5~6천원에 보급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문가들은 이들 사설투자자문사들을 일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신청인은, 무허가 사설투자 자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청인 회

사를 거론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했다(89서울중재21).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사실보도라며 정정보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89카28984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주식회사 현대투자연구소(現代投資研究所)

서울

대표이사 조 승 제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영 기, 오 유 방, 김 태 경, 김 광 훈, 홍 윤 기

피신청인 : 주식회사 제일경제신문(第一經濟新聞)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의 1

대표이사 강 광 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준 열

변론종결 : 1990. 4. 20.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세금융일보」 제9면의 기사란 중 상단부분에 가로 8센티미터, 세로 2단의 크기로 별지 제1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0호 활자로, 나머지 부분은 5호 활자로 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세금융일보 다음 발행호의 9면 기사란 우측 최상단부분에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의 크기로, 제목 부분은 특호 활자로, 본문은 2호 활자로, 나머지 부분은 1호 활자로 하여 별지 제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 1. 피신청인 회사(원래는 주식회사 조세 금융일보사이나 1989. 9. 19. 상호를 변

경합)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로서 일간신문인 조세금융일보의 1989. 4. 11.자 9면 머리기사에 『무허가 사설투자자문사 활개』라는 제목하에 「현대투자연구소등 많은 사설투자자문사가 주요 경제지에 크게 광고를 내고 있어 이들 클럽이 사기성이 없다면 그 많은 광고비를 어디에서 충당하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사설클럽은 월간 또는 주간 주식정보지를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6개월간 30만원씩의 회비를 받는가 하면 공공연히 지사까지 갖추고 있어 지방의 신규투자자들에게 한층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지적됐다.」라는 내용의 기사와 같은 해 4. 16.자 1면 머리기사에 『무허 사설증권자문사 난립』이라는 제목하에 「대표적으로 현대투자연구소등의 경우 신문광고를 통해 증권전문가들이 투자전략을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사실상 10여명 남짓한 사무실을 갖추고 증권사가 자사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를 표지만 바꾸어 보급하고 2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5~6천원에 보급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어 배포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세금융일보에 위와 같은 기사가 게재되어 공표됨으로써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취지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신청인이 위와 같은 기사가 공표됨으로써 피해를 입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그 기사가 「현대투자연구소등 많은 사설투자자문사가」 및 「대표적으로 현대투자연구소등의 경우」로 시작되어 다수의 사설투자자문사를 상대로 한 기사이기는 하나 그 모두에 신청인 회사의 상호를 대표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그 이후의 기사내용은 객관적으로 신청인 회사에 대한 기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신청인은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기사는 그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비평, 논평 등 의사표현 내지 가치판단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기사 중 사실적 주장에 관한 기사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위 기사 중 「이들 클럽이 사기성이 없다면 그 많은 광고비를 어디에서 충당하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방의 신규투자자들에게 한층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지적됐다」는 부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타인의 논평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지 위 기사내용이 사실적 주장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기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부분에 한하여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첫째, 1989. 4.경 국내의 증권시장은 활황국면에

접어들어 투자자가 급증하자 증시주변에는 탈법적으로 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 그 피해자가 속출하여 피고 회사에도 이 사건 각 기사와 같은 내용의 제보가 빗발치는 바람에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탈법적인 사례를 두차례에 걸쳐 대서특필, 고발하여 독자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의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것이며, 둘째 이 사건 각 기사는 모두 진실한 내용을 담은 기사이어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가. 「현대투자연구소등 많은 사설투자자문사가 주요경제지에 크게 광고를 내고 있다」 및 「공공연히 지사까지 갖추고 있다」는 부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율제1호증(신문광고), 소갑제18호증의 8, 9(각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임용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제4호증의 1, 2, 소갑제9호증(각 지사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1989. 4.경 한국경제일보등 주요일간 경제지의 광고란에 『주식투자자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불과 5퍼센트, 5퍼센트의 길로 500명만 모시겠습니다』라는 제목하에 「정보의 허와 실을 날카롭게 포착해 내는 증권가의 베테랑들이 모여 500부 한정으로 주식정보속보를 발행합니다. 한정판매의 목적은 회원께 가장 질 높은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니 501번째 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신청인이 발행하는 「주식정보속보」라는 잡지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 위 광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증권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신청인 회사의 증권부장인 신청외 마 의 지시에 따라 소속기자인 신청외 김 이 위 광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을 대상으로 취재한 후 위 마 은 재무부의 인가를 받은 몇군데의 투자자문사에 전화를 하여 신청인이 위 광고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된 사실, 한편 신청인은 1989. 3. 10.경 마산, 대구, 광명시에 지사를 설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소갑제18호증의 6, 7의 각 기재와 증인 임 의 일부증언(앞서 믿는 부분 제외)은 앞서 본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살피건대, 투자자문업이란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술,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1987. 11. 28. 법 제39945호, 증권거래법 제2조 제10항).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가능한 간행물 또는 통신물 중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 조언은 제외한다(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2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간행물 또는 통신물은 회원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

으로 발행되는 것은 제외한다(1988. 1. 22. 투자자문회사의 등록 및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라는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위와 같은 광고의 내용은 500명의 특정 회원만을 모집하여 주식의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보내준다는 것이어서 신청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투자자문업이라고 할 것이고 재무부에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신청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이는 사설투자자문업 행위라 할 것이며 신청인이 주요 경제지에 광고를 내고 지사를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기사부분의 내용은 진실하다고 볼 것인 바, 위와 같이 진실한 기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신청인의 청구부분은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기사부분.

위 기사부분의 내용이 진실하여 신청인의 그 부분에 관한 정정보도의 청구가 정당한 이익이 없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소갑제18호중의 9, 17, 27, 28, 29의 일부 기재와 증인 이영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기사부분에 대한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하는 기사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다만 신청인들이 신청한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그 게재 방법에 관하여 보면, 우선 그 내용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반함을 시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진실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므로 주문 기재의 정정보도문의 내용의 범위 내로 인정하기로 하고, 다음 그 게재방법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의 게재경위, 인용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역시 주문 기재의 게재방법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25.

재판장 판사 김 대 환
판사 박 재 필
판사 이 동 신

〈별지 1〉 정정보도문

조세금융일보에 1989. 4. 11.자로 게재된 『무허가 사설투자자문사 활개』라는 기사 중 「현대투자연구소가 월간 또는 주간 주식정보지를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6개월간 30만원씩의 회비를 받는다」는 부분과 1989. 4. 16.자로 게재된 『무허가 사설증권자문사 난립』이라는 제하의 기사 중 「대표적으로 현대투자연구소등의 경우 신문광고를 통해 증권전문가들이 투자전략을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사실상 10여명 남짓한 사무실을 갖추고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를 표지만 바꾸어 보급하고 2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5~6천원에 보급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 신청인 주식회사 현대투자연구소

〈별지 2〉 정정보도문

본지 1989. 4. 11.자 9면에 게재된 『무허가 사설투자자문사 활개』 제하의 기사 및 1989. 4. 16.자 1면에 게재된 『무허가 사설증권자문사 난립』 제하의 기사 중 주식회사 현대투자연구소에 관련된 기사는 사실확인 없이 보도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1989. 4. 11.자 기사 중 「투자클럽회원을 모집한다는 현대투자연구소등 많은 사설투자연구소가 주요경제지에 크게 광고를 내고 있어 이들 클럽이 사기성이 없다면 그 많은 광고비를 어디에서 충당하겠느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는 부분, 「이들 사설클럽은 월간 또는 주간 주식정보지를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6개월간 30만원씩의 회비를 받는다 하면 공공연히 지사까지 갖추고 있어 지방의 신규투자자들에게 한층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지적됐다」는 부분 및 1989. 4. 16.자 기사 중 「대표적으로 현대투자연구소등의 경우 신문광고를 통해 증권전문가들이 투자전략을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사실상 10여명 남짓한 사무실을 갖추고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를 표지만 바꾸어 보급하고 2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5~6천여원에 보급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 부분 등은 전혀 사실확인 없이 보도된 것이고, 주식회사 현대투자연구소는 결코 동 기사내용과 같은 무허가·사설증권자문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사실을 밝히고 정정하는 바입니다. □

정부의 방송장악기도에 신청인들이 관련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영문이니셜을 사용했지만
독자가 이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7. 19.자 판결(90카41568)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권 성 부장판사)는 1990. 7. 19일 서울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김 교수와 MBC 車 아나운서 실장이 韓國記者協會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기자협회는 정부의 방송장악기도에 관련된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며 신청인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記者協會報가 1990년 4월 20일자 1면에 『방송장악기도 일부 드러나』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정부의 방송장악기도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연구소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로 방송제도연구위원회에 참가한 K교수와 현직 MBC방송인 C씨 등을 거명하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비록 자신들의 이름을 영문 머리글자로 표기했지만 방송 현업과 학계에 널리 알려진 「서울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서울」을 「한국」으로만 변경하여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치 이 연구소가 방송장악을 위한 정부기관의 외곽팀인 양 보도하여 이 연구소를 개인적으로 운영해 왔던 신청인 및 연구소 운영과 무관하며 단지 김 교수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신청인 차 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였다(90서울중재21).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이 건 기사는 KBS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중간취재결과를 기사화한 것이며 따라서 조사가 완결되어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정정보도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불성립되자 신청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을 영문 이니셜을 사용 K 교수, C씨 등으로 표기했지만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후 문화방송노동조합이 발행하는 노조 특보에서 이 사건 기사를 인용하면서 K교수와 C씨들은 신청인들이라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에서 볼때 기사와 신청인들간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0카41568 정정보도게제

신 청 인 : 1. 김

서울

2. 차

서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김 충 원, 신 재 송, 임 두 빈, 이 인 수

피신청인 : 한국기자협회(韓國記者協會)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한국언론회관 13층

대표자 이 근 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원 순, 안 상 운

변론종결 : 1990. 7. 13.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자협회보」 제1면의 기사란 중 좌측 상단부분에 가로 6.5센티미터, 세로 3단의 크기로 별지 제1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한문 초호고딕체 활자로 왼쪽에 가로로,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 관련』이라는 소제목은 한글 1호 명조체 활자로 오른쪽에 세로로,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한글(다만 신청인들 성명은 한문) 5호 명조체 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기자협회보」 제1면에 5단 16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 제2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한문 영호 활자로 오른쪽에 5단에 걸쳐, 『서울

커뮤니케이션연구소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소제목은 1호 활자로 위 제목 좌측에 세로로 5단에 걸쳐, 정정보도내용은 5호 활자로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피신청인이 매주 금요일 발행하는 기관지인 1990. 4. 20.자 기자회견보 제1면 우측 전단 및 제2면 우측 5단 부분에 걸쳐 『기자협회진상조사단 실체추적과정서 방송장악기도 일부 드러나』라는 제목 및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 개입에 의혹 집중』이라는 소제목 아래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작업과정에서 방송제도 연구위원회와 유관기관들을 연결하는 일종의 외곽팀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소식통에 따르면 이 연구소에는 방송제도연구위원회에 참여했던 <케이(K)교수와 현직 엠비씨(MBC) 방송인 <씨이(C)씨... 등이 주축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이때 조심스레 거론된 이름 중 서울커뮤니케이션연구소나 서울언론클럽 등이 이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않았다.』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2호증(엠비씨 노조특보, 을제3호증과 같다), 강제4호증의 7, 10(각 중재조서)의 각 기재에 중인 남영진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지 3일 후인 같은 달 23. 신청외 문화방송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엠비씨(MBC) 노조특보에서 이 사건 기사를 인용하면서 위 기사내용 중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주축인사로 보도된 「케이(K)」교수와 「씨이(C)」씨는 바로 신청인들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 한편 신청인 김○은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된 서울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설립자인 동시에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여 왔고, 신청인 차○는 현직 문화방송 아나운서실장으로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무렵 문화방송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무시, 부당인사에의 관여 등과 같은 내용의 의혹을 사고 있었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고 할 것(대법원 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서 영문 첫글자로 표기된 「케이(K)」교수와 「씨이(C)」씨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교수나 엠비씨(MBC) 방송인으로서 위와 같은 이니셜을 지닌 자들은 신청인들 이외에도 수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본 신청인들의 경력이나 평판, 이 사건 기사의 보도 직후에 이를 인용보도한 엠비씨(MBC) 노조

특보 기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기자회견보의 독자로 예상되는 신문 및 방송기자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에 보도된 「케이(K)」 교수와 「씨이(C)」씨가 신청인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여지므로, 결국 신청인들은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으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다만,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신청인들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영문 이니셜로 암시한 것에 그친 점은 뒤에서 보는 일부 해명보도의 점과 함께 신청인들이 갖는 정정보도청구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기자협회보」에 공표된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후 신청인 김 의 요구에 따라 1990. 4. 27.자 기자회견보에서 위 김 의 해명주장을 보도한 바 있으니 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기자협회보)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후 신청인 김 의 해명요구에 따라 피신청인이 그 다음호인 1990. 4. 27.자 기자회견보 제1면 좌측 하단에 10행기사로 「김 이 운영하는 서울커뮤니케이션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 개인 연구소로 정부측의 방송개편작업과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당초 보도하였던 이 사건 기사가 기자회견보 제1면의 톱기사로 거의 전면에 걸쳐 신청인 김 을 지칭하는 「케이(K)」 교수가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주축인사로서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작업에 관여하였고 위 신청인이 운영하는 「서울커뮤니케이션연구소」와 위 방송구조 개편작업과의 관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볼 때에 위와 같은 후속보도의 게재내용 및 기사의 분량과 위치 정도로는 이 사건 기사 전부에 대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기사에서 신청인들을 지칭한 표현의 정도, 일부 해명기사의 보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주문 기재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7. 19.

재판장 판사 권 성
판사 조 해 현
판사 장 성 원

〈별지 1〉 정정보도문

소재목 : 한국 커뮤니케이션연구소 관련

1990. 4. 20.자 기자회견보에 『방송장악기도 일부 드러나, 한국 커뮤니케이션연구소 개입에 의혹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김 교수와 엠비씨(MBC) 차 아나운서 실장이 한국 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주축인사로서 정부의 방송구조 개편작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나, 金 교수와 車 실장은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나 방송구조 개편작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정보도 신청인

〈별지〉 정정보도문

제목 : 서울커뮤니케이션연구소 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1990. 4. 20.자 기자회견보에 『방송장악기도 일부 드러나 한국 커뮤니케이션연구소 개입에 의혹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위 연구소장 김 교수와 MBC 차 실장에 대하여 게재된 기사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본보 1990. 4. 20.자 1면 기사로 처리된 『방송장악기도 일부 드러나』 제하의 한국기자협회의 KBS 사태 진상조사활동에 대한 서울커뮤니케이션연구소 관련보도는 사실무근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한국기자협회 충청북도 지부는 하부조직에 불과, 이 건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 1990. 7. 21.자 판결(90카1874)

事實概要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장준철 부장판사)는 1990년 7월 21일 한국기자협회 충청북도지부가 中部毎日新聞社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게재 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신청인인 한국기자협회 충청북도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독립된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한 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中部毎日 1990년 6월 16일자 15면에 『記者체육대회 協助 요청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일부 郡 공보실이 관내 기관, 업체 등에 한국기자협회 충북도지부가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보낼 성금품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부 기업체에서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일로 자율화시대를 맞은 언론의 횡포가 아니냐며 불평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신청인은 충북지역 사회발전과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자들이 친목을 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한 사실을 왜곡, 도내 기관 기업체 등에 압력을 넣은 양 인식되도록 함으로써 충북도지부 및 한국기자협회 전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다(90충북중재3).

중재결과, 피신청인측이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작성된 사실기사이므로 정정보도를 할 수 없다 하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청주지방법원에 정정보도게재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0카 1874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한국기자협회 충청북도 지부

청주

지부장 양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부매일신문(中部每日新聞)

청주시 봉명동 642의 1

대표이사 이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그 발행의 중부매일신문 15면에 4단 제목을 사용하여 ‘정정보도문 : 1990. 6. 16.자 중부매일신문 15면 기자체육대회 협조요청 물의 제하의 4단 기사에서 한국기자협회 충북도지부가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도내기관, 기업체 등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자협회 충북도지부가 주체가 되어 성금품을 강요한 것처럼 보도, 한국기자협회 5,000여 회원과 충북도지회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바,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한국기자협회와 충북도지부의 명예가 실추된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90. 7. 중부매일신문 발행인 이 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한국기자협회보, 충청일보, 중부매일신문,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신문에 5단 전행 광고로 2회씩 게재하라.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

이 유 :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신청인인 한국기자협회 충청도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독립된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한 바,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정정보도등 청구사건심판규칙 제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7. 21

□

재판장 판사 장 준 철

판사 이 승 영

판사 유 숙 옥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정정보도 심판을 청구, 신청이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5.자 판결(90카60650)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권 성 부장판사)는 1990. 9. 25. 최 씨가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의 신청은 중재 불성립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최씨는 중앙일보 사회면 날씨란에 게재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도에 북한이 실제크기보다 작게 그려져 있어 사실에 반한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0서울중재27)

중재부가 위 신청을 검토한 결과 중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다.

決 定 文

사 건 : 90카60650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최

서울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김 동 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용 운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 한다.

이 유 : 직권으로 살피건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의 전체로서 행하여진 위 당사자 사이의 중재절차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1990. 6. 19. 신청인의 중재신청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그 결정문이 같은 달 21. 신청인에게 송달된 사실 및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서가 1990. 7. 21. 당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중재 불성립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25.

□

재판장 판사 권 성
판사 조 해 현
판사 장 성 원

.....

신청인 교단을 지칭하는 구원과의 교리에 대한
비판 논문은 필자의 종교적 척도에 따른 의견 표현으로
사실적 주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0. 10.자 판결(91카81540)

서울고등법원 1992. 8. 21.자 판결(91라161)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1992. 8. 21. 기독교 복음침례회가

「목회와 신학」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문제의 글은 필자의 종교적 척도에 기인한 의견 표현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반박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며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글을 게재한 목적이 종교적 성서적인 관점에서의 신청인 교단의 교리 비판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가치판단이나 의견에 대한 문제는 독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치판단에까지 반박할 권리를 인정하면 언론 활동이 마비 내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목회와 신학」 1991년 6월호에 대전침례회 신학대학 교수의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라는 논문이 게재되자, 신청인은 객관적·사실적인 증거없이 교단을 이단으로 또한 도덕률 폐기론자로 표현했다며 중재신청을 했다(91서울중재45).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4페이지 분량의 반론문 게재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넘어선 양의 반론문 게재를 요구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신청이 기각되었다.

1審 判 決 文

사 건 : 91카81540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기독교복음침례회

서울

대표자 총회장 정 행 덕

피신청인 : 하

서울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목회와 신학」 특별부록란에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그 정정보도문 제1면 4분지 1 상단 중앙에 50급 고딕체 활자로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가?』라는 제목을 쓰고, 정정보도 내용은 2단 본문 활자로 게재하

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 종교잡지인 「목회와 신학」 1991년 6월호 권말특별부록란에 신청인 교단을 왜곡하거나 허위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라는 제목의 신청외 이 쓴 논문이 29면에 걸쳐 게재되어 신청인 교단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신청인측의 반박내용인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가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정정보도문의 내용 역시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어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목회와 신학」지에 게재된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가?』라는 논문의 내용은 「이단구원파에서 계획된 수순에 따라, 필자는 …서부경찰서에 수감되었고 그날 밤 자정에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오대양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들을 비롯해 이 집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재산을 바치고 이혼한 피해자들은 한두명이 아니다」, 「극동방송 탈취음모를 꾸미던 구원파측 직원 11명을 1974년 7월 30일자로 해고했다」, 「구원파의 운동방향을 총지휘하던 한국 평신도복음선교회의 교주 유씨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목사가 역시 제의 사업운영을 비판하다 집단폭행을 당하고 전국 5천여 교인과 함께 이탈했다」, 「권씨와 유씨의 기만적인 설교에 현혹되어 수천만원을 바치고 알거지가 된 피해자들은 한결같이」라는 등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기재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29면에 달하는 위 논문의 대부분이 신청인 교단을 지칭하는 구원파의 성서관, 하나님관, 구원관, 기도관, 예배관, 교회관, 종말관 등 교리에 대한 종교적 척도에 따른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기재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으며, 나아가 위 보도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역시 위 논문 중 위에서 본 사실적 주장에 대한 사실적 진술로서의 반박이라기보다는 위 논문의 필자인 신청외 에 대한 개인적인 비방이나 위 구원파의 교리비판에 대한 종교적 척도에 따른 주관적인 반박비판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은 사실적 주장의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적 진술로서의 정정보도를 신청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10.

재판장 판사 이 규 홍
판사 김 창 보
판사 최 종 갑

2審 判 決 文

사 건 : 91라161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기독교복음침례회

서울

대표자 총회장 정 행 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정 서

상대방, 피신청인 : 하

서울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영 환

원 결 정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0. 10.자 91카 81540 결정

주 문 :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 원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목회와 신학」지 특별 부록란에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그 정정보도문 제1면 4분의 1 상단 중앙에 50급 고딕 활자로 『구원파,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쓰고, 정정보도문 내용은 2단 본문 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결정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 종교잡지인 「목회와 신학」지 1991년 6월호 권말 특별부록에 침례교신학대학교 교수인 신청의 이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아래 머릿말, 구원파의 역사, 구원파의 비판에 임하는 입장, 구원파 교리비판(성서관, 하나님관, 구원관, 기도관 및 예배관, 교회관, 종말관), 맺음말의 순서로 기고한 글을 238면부터 265면까지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이 위 잡지에 게재된 위 글의 내용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신청인 교단의 교리를 허위비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월간지의 발행인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지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원 결정 법원은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가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뿐 아니라 그 정정보도문의 내용 역시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위 이 기고하여 「목회와 신학」지에 게재된 위 글에는 일부 사실적인 주장에 관한 기재가 있으나 위 글의 대부분은 신청인 교단을 지칭하는 구원과의 성서관, 하나님관, 구원관, 기도관, 예배관, 교회관, 종말관 등 교리에 대한 종교적 척도에 따른 주관적 가치판단을 기재한 것이고,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 역시 사실적 주장에 대한 진술로서의 반박이라기 보다는 위 글의 필자인 위 에 대한 개인적인 비방이나 구원과의 교리비판에 대한 종교적인 비판을 담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정정보도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한 항고 이유의 요지는, 위 정동섭이 기고한 위 글은 신청인 교단의 비리나 피해 사례 등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뿐더러 신청인 교단의 교리를 사실대로 적시한 다음 종교적, 성서적인 비판을 가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 교단의 교리가 아닌 것을 신청인 교단의 교리로 허위적시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사건 정정보도 신청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원 결정 법원이 이를 오해하여 단순히 종교적인 척도에 따른 주관적 가치판단에 관한 글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이를 반박하는 사실적 진술 및 이를 명백히 전달하기 위한 설명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문 기사가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만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가치판단, 의견표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그 취지는 일방적인 보도로 인하여 독자에게 생길 편견의 우려는 사실보도인 경우에 크게 문제가 되고 가치판단이나 의견에 대한 문제는 독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치판단에까지 반박할 권리를 인정하면 오히려 언론활동의 마비 내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때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반드시 외부적으로 인식가능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반면 가치판단이라 함은 윤리적, 종교적, 예술적 척도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떤 글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관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글이 의도하는 바, 글이 실린 정기간행물의 성

격, 게재 경위, 독자층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 데 하나는 신청인 교단을 신청외 유 이나 그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세모 또한 오대양 사건과 관련시켜 「구원파 교주인 유 씨와」, 「구원파에서 계획한 수순에 따라 필자는 두번째 조사차 경찰에 출두하였다가 서부경찰서에 수감되었고」, 「오대양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들을 비롯해 이 집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재산을 바치고 이혼한 피해자들은 한 두명이 아니다」, 「권씨와 유씨의 기만적인 설교에 현혹되어 수천만을 바치고 알거지가 된 피해자들은 한결 같이 권씨와 유씨의 설교에 현혹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유씨는 교인이 운영하던 부실 기계자수회사 삼우레이닝을 인수, 교인들의 성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등의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교단은 위 유 과 주식회사 세모 및 오대양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반박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신청인 교단의 교리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고, 허위비방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반박내용과 원문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관련된 경우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와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반박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는 바, 전자의 경우 중에는 정정보도문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에 게재된 내용이 원문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글을 게재한 목적이 종교적, 성서적인 관점에서의 신청인 교단의 교리비판에 있음은 위 글이 게재된 잡지의 성격, 위 글을 게재하게 된 경위, 위와 같은 기술내용이 위 글 중 자리잡은 위치 등에 비추어 명백한 만큼 위와 같은 위 의 기고문 중에 「구원파의 교주인 유 씨와」, 「구원파에서 계획한 수순에 따라 필자는 두번째 조사차 경찰에 출두하였다가 서부경찰서에 수감되었고」, 「유씨는 교인이 운영하던 부실 기계자수회사 삼우트레이딩을 인수, 교인들의 헌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등의 내용은 신청인 교단이 이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지엽적인 언급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비추어 볼 때 정정보도문의 내용 중 「오대양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들을 비롯해 이 집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재산을 바치고 이혼한 피해자들은 한 두명이 아니다」, 「본인은 1968년부터 1977년까지 8년간을 구원파 소속 교인으로 충성했던 사람이다. 특히 구원파의 두 지도자 씨의 측근에서 통역 및 수행원 역할을 했었다」는 등의 내용에 대한 반박은 오히려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반박보도내용이 일부 사실적인 주장에 관련된 것일지라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또한 「권씨와 유씨의 기만적인 설교에 현혹되어 수천만원을 바치고 알거지가 된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권씨와 유씨의 설교에 현혹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부분과 같이 신청인 교단이 아닌 위 권 목사나 유 씨가 피해자라고 해야 할 내용까지 반박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 교단의 교리 즉 성서관, 하나님관, 구원관, 기도관 및 예배관, 교회관, 종말관에 관한 내용(예컨데, 기도와 예배를 부인한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율법 폐기론자인 구원과 등)은 위 정동섭의 종교적 척도에 기인한 의견표현인 이상 사실주장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단은 독자에게 맡김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에 대한 반박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원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8. 21.

□

재판장 판사 신 명 균

판사 전 병 식

판사 김 옥 신

.....

드라마 「배반의 장미」 작가인 신청인이 대본을
교부하지 않아 제작이 중단되었다는 등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1. 30.자 판결(90카68698)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권 성 부장판사)는 1990. 11. 30. 작가 김 (필명

김 씨가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의 기사와 관련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간주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며 신청인 주장 일부를 인용했다.

중앙일보 1990. 7. 13.자 「중앙광장」란 『MBC-TV 「배반의 장미」 대본 못써 제작 “평크”』 제하의 기사에서 「MBC-TV 인기 주말 드라마 「배반의 장미」는 작가 김 씨가 대본을 쓰질 못해 토요일 프로는 생략하고 일요일만 방송될 듯」이라며 「안방 극장을 쉽사리 석권할 줄 알았던 김 씨의 밀도 높은 드라마 전개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신청인은 방송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저작권 문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대본 교부를 거부한 것으로, 자신의 무성의 또는 무능력으로 대본을 못써 방송제작이 중단되었다는 위 보도는 잘못되었다며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내용의 진실여부는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무가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이유없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이전 소송에 앞서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제의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했으나(90서울중재63) 피신청인측이 해명기사 형태로 보도할 수는 있으나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불성립 되었다.

判 決 文

사 건 : 90카68698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김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수 복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김 동 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순 호, 홍 석 제

변론종결 : 1990. 11. 9.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앙일보」의 주 1회 발행 특집지면 「중앙광장」의 제22면 기사란 중 좌측상단 부분에 가로 2단 세로 14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한글 초호 명조체 활자로, 정정보도문 내용은 한글 5호 명조체 활자로,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한글2호 명조체 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앙일보」 중앙광장 제22면의 기사란중 좌측 상단 부분에 가로 4단 세로 약 16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 고딕체 활자로 상측에 3단에 걸쳐, 정정보도문 내용은 본문 활자로 그 하측에 4단에 걸쳐, 정정보도 신청인 이름은 9 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1단에 걸쳐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 피신청인이 일간신문인 「중앙일보」를 발행하면서 매주 1회 「중앙광장」이라는 특집지면을 증면 발행하여 오던 중 1990. 7. 13.자 「중앙광장」의 제22면 기사란 좌측 상단 부분에 『「M-TV 「배반의 장미」』, 『대본 못써 제작 「핑크」라는 제목과 「밀도도 기대 못미치는데 연출진 푸념』이라는 소제목 아래 「MBC-TV 인기 주말드라마 “배반의 장미”는 이번 주에 작가 김 씨가 미쳐 대본을 쓰지 못해 토요일 프로는 생략하고 일요일만 방송될 듯, 중략, 작가 김씨가 핑크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중략, 안방극장을 쉽사리 석권할 줄 알았던 김 씨의 밀도 높은 드라마전개가 기대에 못미치는 데다, 중략, … 제작자는… “작가 김씨가 지방에 침거하면서 일방적으로 대본을 보내기만 하고 연락조차 어려워 수시로 접촉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푸념』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MBC-TV 「배반의 장미」의 한 장면』이라는 사진과 함께 가로 4단 세로 14센티미터의 크기로 게재한 사실 및 위 기사에 거시된 성명 「김 」이 신청인의 필명인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신청인이 위 기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반론의 게재를 구하고 있음은 이 사건 신청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사와 관련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간주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기사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

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 행사의 요건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신청인이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크기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별지기자 정정보도문은 위 기사내용에 대한 신청인의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어 있어 이를 전부 게재하여야 할 것이나, 그 크기 및 활자는 위 기사의 크기 및 활자와 별지기자 정정보도문의 크기 등에 비추어 주문기재의 크기 및 활자로 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주문기재 한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1. 30.

재판장 판사 권 성
판사 조 해 현
판사 장 성 원

정정보도문

1990. 7. 13.자 본지 제22면 주말 TV저널란에 『M-TV 「배반의 장미」 대본 못써 제작, “핑크” 밀도도 기대 못미치는데 연출진 푸념 등의 제목 또는 소재목 아래 「MBC-TV 인기 주말 드라마 배반의 장미는 작가 김 씨가 대본을 쓰질 못해 토요일 프로는 생략하고 일요일만 방송될듯... 안방극장을 쉽사리 석권할 줄 알았던 김 씨의 밀도 높은 드라마 전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작가 김씨가 지방에 칩거하면서 일방적으로 대본을 보내기만 하고 연락조차 어려워 수시로 접촉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작가 김 은 그 당시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으로서 방송작가들을 대표하여 방송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저작권보호 문제에 대하여 방송국측과 협상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방송대본 교부를 거부키로 하고 1주일 전에 방송국에 통고한 후 1회분 『배반의 장미』 방송대본을 넘기지 아니하였을 뿐, 작가의 무성의 또

는 무능력으로 대본을 못써 방송제작을 중단케 한 사실이 없고, 한편 MBC 연출진이 밀도도 기대에 못미치는데 라는 말은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작가 김씨가 지방에 침거하여 제작진과 연락조차 어려웠던 사실은 없다.

정정보도 신청인

□

신문 판매권을 장악,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된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2. 7.자 판결(90카74637)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권 성 부장판사)는 1990년 12월 7일 진 씨가 주관 노동자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노동자신문의 관련기사에 의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간주되므로, 신청인의 반박을 내용으로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면서, 신청인 주장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위와 같이 판결했다.

주관 노동자 신문이 1990년 7월 27일자 제11면 『전철 신문판매원들 권익단체 결성 기도』와 『북마전을 방불케하는 치부 수법』등 제하의 기사에서 「수도권 전철의 신문판매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부녀복지연합회등 6개 복지법인이나 그 대리인들이 신문공급과정에서 막대한 중간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1호선 전철구간의 판매권을 장악하고 있고 부녀복지회 실제운영권자인 진 씨는 판매원들을 일일고용형태로 채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판매원들에게 협박 욕설 등 비인간적인 횡포를 일삼고 있고 판매원들이 권익단체를 결성하려하자, 방해공작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위 기사 내용은 허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0서울중재66).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위 기사는 사실에 부합하여 정정보도 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0카74637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진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명 훈

피신청인 : 주식회사 주간노동자신문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5의 98

대표이사 황 상 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병 모

변론종결 : 1990. 11. 9.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노동자신문」 제11면의 기사란 중 좌측 상단에 가로는 3단, 세로는 25센티미터 내외의 크기로 별지 제1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초호 명조체로,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5호 명조체 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 송달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노동자신문」 제11면의 기사란의 상단 부분에 가로 8단 세로 14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 제2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0호 고딕체 활자로 윗쪽에 가로 2단으로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본문 활자로 게재하여

야 한다는 판결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 신문인 1990. 7. 27.자 「노동자신문」 제11면 기사란에 『전철신문판매원들, 권익단체결성키로』라는 제목과 『오는 29일 부너복지연합회등 판매원자의 부당한 처우에 반발』이라는 소제목 아래 「수도권 4개호선 전철의 신문판매원은 한국 부너복지연합회등 6개 복지법인이나 그 대리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문사로부터 50원 안팎의 가격으로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원들에게 130원에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막대한 중간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6개 법인들은... 판매원들을 일일고용의 형태로 채용해 부당이득을 취할뿐 아니라 협박, 욕설 등의 비인간적인 횡포를 일삼고 있다. 특히 1호선 전철구간의 판매권을 장악하고 있는 부너복지연합회 사업국의 경우 실제 운영자인 사업과장 진 씨가 판매원들의 수입이 입금되는 개인통장을 통합관리하면서 자신의 인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해 부당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판매인 연합의 결성 추진사실이 알려지면서 판매원자들의 결성방해 공작도 노골화되고 있는데 부너복지연합회측의 경우 판매원들의 숙소를 폐쇄한 채 각서를 쓰고 다시 일을 하거나 그만 둘 것을 강요해 판매원들이 20일 오후에 일시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으며 다른 5개 법인도 문제의 비화를 염려해 부너복지연합회에 방해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보도기사와 『복마전을 방불케하는 치부수법』이라는 제목과 『신문판매원 결사 계기로 본 판매업자들의 비리』라는 소제목 아래 「...부너복지회... 사무실은 본부(마포구 공덕동)와 신문판매업전담의 사업국(중구 순화동)이 따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로는 별개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즉 부너복지회사업국의 실제 운영자인 진 씨가 복지회의 명의만 빌려 수입을 나눠 먹는 수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소속판매원 30여명에게는 부너복지회 본부의 수입으로 할당되는 1천여부의 판매 할당량이 책정돼 있다... 사업국 사업과장으로 돼있는 진씨는 판매원들에게 「청소년 사업부장」으로 통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일보 판매국과 관련있는 「청운회」의 대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앙일보는 판매면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다... 판매원들을 일일고용형태로 채용 아무런 수당이나 상여금도 주지 않으면서 취한 막대한 중간이득이 진씨와 같은 판매원자들의 주요 수입원이다... 채용된 판매원들은 신문 1부당 70원씩 남는 이익금이 모여 목표액이 채워질때까지 조·석간 팀별로 1일 평균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감수해야 한다. 몸이 아파 쉬거나 요령을 피우는 것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목표액이 채워질 때까지 판매원들의 수입금이 적립되는 개인통장은 사업과장인 진씨가 직접 관리한다. 통장의 인감은 예금주가 누구건간에 진씨의 것만이 사용돼 진씨만이 판매원들의 개인돈

을 자유롭게 빼내고 집어넣을 수 있다...사업국측은 또 근무규칙상의 「무료급식·거주·의복제공」 조항을 위배하고 1인당 급식비 및 거주비로 1일 2천원씩을 공제해 왔다. 판매원들의 숙소는 사업국에 딸려 있는데 부녀복지회에서는 무료의식주 제공을 위하여 얼마간의 보조비를 사업국측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과장 진씨는 나이 어린 판매원들을 학대해 이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각서내용에 따라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돈을 찾지 못하는 점을 이용 낙전을 챙기고 그간의 이자 역시 자신이 착복하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굳이 그 돈을 찾자면 3개월 혹은 6개월을 질질 끌었다. 뿐만아니라 진씨는 노른자위인 지하 서울역 및 지하 청량리역의 6개 신문 가판대를 친인척 명의로 사실상 소유, 가판대 1개당 연간 순수익만 수천만원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 가판대에는 다른 가판대에 대한 신문의 부당 공급가격(1백원)이하인 70원씩에 넘겨진다는 것이다. 신문판매원들은 진씨가 이렇게 모은 재산이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라는 내용의 해설기사가 가로 8단 세로 14센티미터 내지 20센티미터의 크기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신청인이 위 기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반론의 게재를 구하고 있음은 이 사건 신청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사와 관련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간주되므로 피신청인은 위 기사내용에 대한 신청인의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반박문인 별지 제2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므로 이를 게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율제 1호증(취지문) 소율제2호증(나팔수 창간호) 소율제3호증(나팔수 제2호) 소율제4호증(우리의 결의) 소율제5호증(호소문) 소율제6호증(취업규칙) 소율제7호증(통장)만으로는 위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점과 위 기사의 크기 및 활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이 게재하여야 할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활자는 주문기재의 범위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주문기재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송법 제89조 제92

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2. 7.

재판장 판사 권 성
 판사 조 해 현
 판사 장 성 원

〈별지 1〉 정정보도문

1990년 7월 27일자 노동자신문 11면에 게재된 『전철 신문판매원들 권익단체 결성키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수도권 4개호선 전철의 신문판매원은 한국 부녀복지연합회등 6개 복지법인이나 그 대리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문사로부터 50원 안팎의 가격으로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원들에게 130원에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막대한 중간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수도권 4개호선 전철의 신문판매원은 한국부녀복지연합회등 6개 복지법인에서 직접 운영하고 100~105원에 신문을 구입하여 신문판매원들에게 130원에 공급하여 주고 수익금은 전액 사회사업에 쓰고 있다.

「판매원들을 일일고용 형태로 채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뿐만 아니라 협박, 욕설 등의 비인간적인 행포를 일삼고 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 운영자인 진 씨가 개인통장을 통합관리하면서 자신의 인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해 부당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진 씨는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관리과장일 뿐이며 인감을 통일한 것은 저축통장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자의 통장은 항상 비치해서 입출금을 본인이 확인한다. 「결성방해공작도 노골화되고 있는데 부녀복지 연합회측의 경우 판매원들의 숙소를 폐쇄한 채 각서를 쓰고 다시 일을 하거나 그만둘 것을 강요해 판매원들이 20일 오후에 일시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으며 다른 5개법인은 문제의 비화를 염려해 부녀복지연합회에 방해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판매원들이 신문판매를 집단 거부했을때 판매원들을 설득하였을 뿐이다.

「사무실은 본부(마포구 공덕동)와 신문판매업 전담의 사업국(중구 순화동)이 따로 운

영되어 있어 실재는 별개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즉 부녀복지회 사업국의 실재운영자인 진 씨가 복지회의 명의만 빌려 수입을 나눠먹는 수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진 씨는 사업부의 관리 과장으로 이동판매원을 관리하고 있는 직책을 수행하는 직원일 뿐이다.

「이와 관련 소속 판매원 30명에게는 부녀복지회 본부의 수입으로 할당되는 1천여부의 판매 할당량이 책정돼 있다고 판매원들은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판매원들에게는 팔고 남은 신문은 전량 반품해 주고 있으며 강제적인 판매 할당량을 정한 일은 없다.

「사업국 사업과장으로 되어있는 진씨는 판매원들에게 청소년 사업부장으로 통하지만 실재는 중앙일보 판매국과 관련있는 청운회의 대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앙일보는 다른 신문들보다 판매면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들 판매원들을 일일고용 형태로 채용, 아무런 수당이나 상여금도 주지 않으면서 취한 막대한 중간이득이 진씨와 같은 판매권자들의 주요 수입원이다. 그러나 착취수단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채용된 판매원들은 신문 1부당 70원씩 남은 이익금이 모여 목표액이 채워질때까지 조·석간 팀별로 1일 평균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감수해야 한다. 몸이 아파 쉬거나 요령을 피우는 것을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전 판매사원들은 조간 5시~12시, 석간 12시~20시, 지방판 20시~24시까지의 3단계로 구분하여 판매토록 하고, 조간 석간반 판매원 중에서 판매원은 자기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방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목표액이 채워질 때까지 판매원들의 수입금이 적립되는 개인통장은 사업과장인 진씨가 직접관리한다. 통장의 인감은 예금주가 누구건간에 진씨의 것만이 사용돼 진씨만이 판매원들의 개인 돈을 자유롭게 빼내고 집어 넣을 수 있다. 예금주와 인감명의가 틀린 불법거래는 상업은행 서소문지점의 양해아래 이뤄진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통장관리를 해 주는 것은 저축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며, 판매원들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장을 통일해서 사용했을 뿐이며 그것이 불법 거래는 아니다.

「사업국측은 또 근무규칙상의 무료급식, 거주, 의복제공 조항을 위배하고 1인당 급식비 및 거주비로 1일 2,000원씩 공제해 왔다. 판매원들의 숙소는 사업국에 딸려있는데 부녀복지회에서는 무료의식주 제공을 위해 얼마간의 보조비를 사업국측에 지급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자체 예산의 후생복지비 중 식비지원금을 1인당 1,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사업과장 진씨는 나이 어린 판매원들을 학대해 이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각서 내용에 따라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돈을 찾지 못하는 점을 이용, 낙전을 챙기고 그간의 이자 역시 자신이 착복하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굳이 찾자면 3개월 혹은 6개월을 질질 끌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진 씨는 관리과장 8년 재직 기간 중 약 500여명의 판매원들을 선도하여 사회로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단 한마디의 욕설 또는 구타한 사실이 없고 언제든 그만두는 판매원들에게는 저축금을 정산하여 즉시 지급하였으며 이자는 모두 자기명의의 통장에 은행측에서 3개월마다 정산하여 입금시켜 주었다.

「뿐만 아니라 진씨는 노른자위인 지하 서울역 및 지하 청량리역의 6개 신문가판대를 천 인척 명의로 사실상 소유 가판대 1개당 연간 순수익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특히 이들 가판대에는 다른 가판대에 대한 신문이 1부당 공급가격(1백원) 이하인 70원씩에 넘겨진다는 것이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한국부녀복지연합회에서는 신문사에서 100원 또는 105원에 구입하여 이동판매원이든 가판대이든 모든 신문은 130원에 공급하고 있다.

「신문판매원들은 진씨가 이렇게 모은 재산이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진 씨의 재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을 뿐이고 부당한 이득으로 모은 재산은 아니다.

정정보도 신청인

〈별지 2〉 정정보도문

본보 1990년 7월 27일자 (제40호) 11면에 보도된 전철 신문판매원들, 권익단체 결성기로 제하의 기사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수도권 4개호선 전철의 신문판매권은 한국부녀복지연합회등 6개 복지법인이나 그 대리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문사로부터 50원 안팎의 가격으로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원들에게 130원에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막대한 중간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보도했으나 수도권 4개호선 전철의 신문판매권은 한국부녀복지연합회등 6개 복지법인에서 서울지하철공사와 계약 체결하여 매년 판매권을 득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 단체들은 100~105원에 신문을 구입하여 신문판매원들에게 130원에 공급해 주고 이익금에서 임대료,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은 각 단체별로 전액 사회사업에 쓰고 있다고 한다.

판매원들을 일일고용 형태로 채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뿐만 아니라 협박, 욕설 등의 비인간적인 횡포를 일삼고 있다. 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부당이득을 한 바 없고 판매원들에게 협박, 욕설 등의 비인간적인 횡포를 하는 곳은 없다고 한다.

실제 운영자인 진 씨가 개인통장을 통합관리하면서 자신의 인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해 부당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진 씨에 의하여 그는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관리과장일 뿐이며 인감을 통일한 것은 저축통장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자의 통장은 항상 비치해서 입출금을 본인이 확인하므로 부당유출 가능성도 전혀없다고 하고 있다. 결성방해공작도 노골화되고 있는데 부녀복지연합회측의 경우 판매원들의 숙소를 폐쇄한 채 각서를 쓰고 다시 일을 하거나 그만둘 것을 강요해 판매원들이 20일 오후에 일시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으며 다른 5개법인도 문제의 비화를 염려해 부녀복지연합회에 방해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판매원들이 신문판매를 집단 거부했을 때 판매원들을 설득한 것 외에는 숙소 폐쇄나 각서를 강요한 적이 없고 다른 단체에서의 방해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 있다.

사무실은 본부(마포구 공덕동)와 신문판매업 전담의 사업국(중구 순화동)이 따로 운영되어 있어 실체는 별개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즉 부녀복지회 사업국의 실제 운영자인 진 씨가 복지회의 명만 빌려 수입을 나눠먹는 수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라고 보도된 바 있으나 진 씨는 사업부의 관리 과장으로 이동판매원을 관리하고 있는 직책을 수행하는 직원일 뿐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소속 판매원 30명에게는 부녀복지회 본부의 수입으로 할당되는 1천여부의 판매 할당량이 책정돼 있다고 판매원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판매원들에게는 팔고 남은 신문은 전량 반품해 주고 있으며, 강제적인 판매 할당량을 정한 일은 없다고 한다.

사업국 사업과장으로 되어있는 진씨는 판매원들에게 청소년 사업부장으로 통하지만 실체는 중앙일보 판매국과 관련있는 청운회의 대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앙일보는 다른 신문들보다 판매면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다. 라고 보도되어있으나 진 씨는 사업

국의 관리과장일 뿐으로서 중앙일보 판매국에는 청운회란 조직이 없으므로 그 대표가 될 수 없고 다른 신문에 비해 특별한 배려는 없다고 한다. 이들 판매원들을 일일고용 형태로 채용, 아무런 수당이나 상여금도 주지 않으면서 취한 막대한 중간이득이 진씨와 같은 판매원자들의 주요 수입원이다. 그러나 착취수단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라고 보도되었으나 진준강 씨는 아무런 중간이득을 취하거나 달리 착취한 일이 없다고 한다.

채용된 판매원들은 신문 1부당 70원씩 남은 이익금이 모여 목표액이 채워질때까지 조·석간팀별로 1일 평균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감수해야 한다. 몸이 아파 쉬거나 요령을 피우는 것을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보도되었으나 전 판매사원들은 조간 5시~12시, 석간 12시~20시, 지방판 20시~24시까지의 3단계로 구분하여 판매토록 하고 조간·석간반 판매원 중에서 판매원은 자기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방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몸이 아파도 신문판매를 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목표액이 채워질 때까지 판매원들의 수입금이 적립되는 개인통장은 사업과장인 진씨가 직접 관리한다. 통장의 인감은 예금주가 누구건간에 진씨의 것만이 사용돼 진씨만이 판매원들의 개인 돈을 자유롭게 빼내고 집어 넣을 수 있다. 예금주와 인감명이가 틀린 불법거래는 상업은행 서소문지점의 양해 아래 이루어진다. 라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통장관리를 해 주는 것은 저축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며, 다수 판매원들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장을 통일해서 사용했을 뿐이며, 그것이 불법 거래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사업국측은 또 근무규칙상의 무료급식, 거주, 의복제공 조항을 위배하고 1인당 급식비 및 거주비조로 1일 2,000원씩 공제해 왔다. 판매원들의 숙소는 사업국에 딸려있는데 부녀복지회에서는 무료의식주 제공을 위해 얼마간의 보조비를 사업국측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되었으나 근무규칙상 이와 같은 조항도 없고 사업국에서는 거주비와 의복비는 일체받지 않고 있고 자체 예산의 후생복리비 중 식비지원금을 1인당 1,000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과장 진씨는 나이 어린 판매원들을 학대해 이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각서 내용에 따라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돈을 찾지 못하는 점을 이용, 낙전을 챙기고 그간의 이자 역시 자신이 착복하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굳이 찾자면 3개월 혹은 6개월을 질질 끌었다.라고 보도되었으나 진 씨는 관리과장 8년 재직기간중 약 500여명의 판매원들을 선도하여 사회로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단 한마디의 욕설 또는 구타한 사실이 없고 언제든 그만두는 판매원들에게는 저축금을 정산하여 즉시 지급하였

으며 이자는 모두 자기명의의 통장에 은행측에서 3개월마다 정산하여 입금시켜 주었으므로 낙전을 챙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진씨는 노른자위인 지하 서울역 및 지하 청량리역의 6개 신문 가판대를 친, 인척명으로 사실상 소유, 가판대 1개당 연간 순수익만 수천만원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진 씨가 소유한 가판대는 1개도 없다고 한다.

특히 이들 가판대에는 다른 가판대에 대한 신문이 1부당 공급가격 (1백원) 이하인 70원 켜에 넘겨진다는 것이다. 라고 보도되었으나 한국부녀복지연합회에서는 신문사에서 100원 또는 105원에 구입하여 이동판매원이든 가판대이든 모든 신문은 130원에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신문판매원들은 진씨가 이렇게 모은 재산이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라고 보도되었으나 진 씨의 재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을 뿐이고 부당한 이득으로 모은 재산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

일기예보란의 지도에서 북한지역이 실제보다 작게
그려진 것과 관련,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각하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4. 3.자 판결(90카110595)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991. 4. 3. 이 씨가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위와같이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이씨는 중앙일보 사회면 날씨난에 게재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북쪽이 남쪽보다 더 축소되어 있어 사실에 관할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고 통일을 저해한다며 언

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0서울중재93).

중재부가 신청인이 본건 보도로 인해 어떤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 신청할 적격이 없다며 각하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냈다.

決 定 文

사 건 : 90카110595 정정보도제재

신 청 인 : 이

서울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김 동 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용 운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 한다.

이 유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사회면 일기예보 란의 우리나라 지도에 북한지역이 실제와 맞지않게 작게 그려져 있는 바 이는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그 정정보도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991. 4. 3.

재판장 판사 이 규 홍

판사 김 창 보

판사 최 종 갑

신청인이 불법해외유학 알선혐의로 경찰에
수배되었다는 보도에 의해 명예훼손등의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1. 9. 9.자 판결(91카7208)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1991년 9월 9일 TV텔런 트검 영화배우 **崔 씨**가 민주일보사(主婦生活)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 발행의 <주부생활>에 공표된 이 사건 기사는 신청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의 성격을 띤 보도로서 그로 인해 신청인이 명예훼손등의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했다.

主婦生活 1991년 5월호 370~375면에 『일류대학 갈 수 있었던 내 딸, 유학병으로 가출소녀 되었습니다.』 제하의 기사에서, 「코리아 아카데미 유학원 이사장 **최 씨**가 불법해외유학 알선 혐의로 경찰에 수배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신청인은 일정액을 받고 코리아 아카데미의 광고모델과 학생들의 유학상담에 응했을 뿐 유학알선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냈다(91서울중재30).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위 유학원이 주선하는 해외유학이 불법성을 띤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뿐 더러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외유학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데 관여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 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1카7208 정정보도

신 청 인 : 최

서울

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피신청인 : 주식회사 민주일보사(民主日報社)

대표이사 김 영 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의 37

변론종결 : 1991. 8. 19.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부생활」 제373면의 중앙 하단 사각 테두리 내에 좌측에는 가로 4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 규격의 신청인 사진을 싣고 위 사진의 우측에는 제목 『정정보도문』을 38호 고딕체 동판 부식 활자로,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본문 활자로 하여,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 내용이 별지2 기재와 같은 외에 주문과 같다.

이 유 : 1.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제1호증(주부생활 표지 및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 여성잡지인 「주부생활」 1991년 5월호 제370면 이하에 『일류대학 갈 수 있었던 내 딸, 유학병으로 가출소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조기유학의 문제점등에 관한 수기형식의 기사를 실으면서, 그 내용 중 위 잡지 373면 중앙부분에 가로 7.3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 규격의 신청인 사진을 싣고 그 우측 하단에 「최 <코리아 아카데미 유학원>의 이사장으로 있으며 자신의 사진이 실린 신문광고를 통해 중고등학생을 모집, 거액의 수수료를 받으며 불법으로 이들의 해외유학을 주선해 왔었다」라는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 발행의 정기간행물인 「주부생활」에 공표된 이 사건 기사는 신청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의 성격을 띤 보도로서 그로 인해 신청인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위 「주부생활」에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은, 첫째,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여 그에 반하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명백히 진실에 반하고, 둘째, 그렇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대중의 관심과 신

뢰를 바탕으로 한 인기 연예인의 위치에서 함부로 아무런 공신력이 없는 위 「코리아 아카데미 유학원」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 주고 나아가 위 유학원의 이사장이라는 호칭하에 신청인의 사진을 게시한 신문광고를 내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신청인을 믿고 위 유학원을 찾은 학부모 등이 위 유학원의 실질적 경영자인 유 등의 사기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데 결과적으로 방조한 책임이 있으므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이니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첫째 신청인이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해외유학을 주선했다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갑제3호증의 13, 27, 29, 30, 31, 35(각 피의자 신문조서), 66(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원래 (주)코리아 아카데미(이하「위 유학원」이라 표시한다)의 주선으로 미국유학을 다녀 온 관계로 위 유학원의 실질적 경영자인 유 (신청외) 등을 상대로 해외유학사기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1991. 5. 18.자 구속 기소됨)등으로부터 위 유학원의 광고모델을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응낙함으로써 위 유 등이 신청인의 사진(신청인이 위 유학원의 이사장인 양 표시하였다)을 실은 신문광고를 내보내고 신청인이 가끔씩 위 유학원의 강남지사 사무실에 나가 학부모들의 상담에 응하여 주고 교통비 등 명목으로 월 150만원 정도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 유학원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따라서 신청인은 위 유학원이 주선하는 해외유학이 불법성을 띤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뿐더러 위 유 등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외유학알선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데 관여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며, 둘째 비록 신청인에게 위 해외유학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주장과 같은 과실이나 결과적 또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가 그러한 신청인의 과실점등을 사실대로 보도한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허위내용을 보도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신청인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이상 위 둘째의 주장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다만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를 반박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동법 제16조 제4항),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6항), 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 취지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법으로 원문보도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 정정보도문의 말미에는 정정보도 신청인 이름을 표시하여야지 원문보도자의 이름을 표시할 것은 아니

라 할 것이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도 위의 제점에 비추어 별지1 기재의 범위내에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9. 9.

재판장 판사 최 동 렬
판사 여 상 원
판사 김 용 대

〈별지 1〉 정정보도문

「주부생활」 5월호는 「최 씨는 <코리아 아카데미 유학원>의 이사장으로서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중고등학생들의 불법해외유학을 주선했다」고 보도했으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 신청인

〈별지 2〉 신청인이 신청한 정정보도문

1991. 5. 1. 발행 본지 5월호 제373면에, 『일류대학 갈 수 있었던 내 딸, 유학병으로 가출 소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과 『나는 이렇게 유학사기 당했다』는 소제목 아래, 「최 씨의 사진」과 「최 씨는 <코리아 아카데미 유학원>의 이사장으로 있으며 자신의 사진이 실린 신문광고를 통해 중고등학생을 모집, 거액의 수수료를 받으며 불법으로 이들의 해외유학을 주선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주)코리아 아카데미여행사의 신문광고에 사진제시를 승낙하고 유학희망자들에게 상담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월 금 150만원을 받았을 뿐, 직접 수수료를 받거나 불법해외유학을 주선했던 사실도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1991.

主婦生活 발행인 김 영 수



신청인이 불법해외유학 알선혐의로 경찰에
수배되었다는 보도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1. 15.자 판결(91카65411)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1991년 11월 15일 TV텔런트겸 영화배우 **崔 씨**가 서울신문사(선데이 서울)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 발행의 <선데이 서울>에 공표된 이 사건 기사는 신청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의 성격을 띤 보도로서 그로 인해 신청인이 명예훼손등의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崔씨는, 선데이서울 1991년 4월 28일자 48~49면 『아역스타 최 유학경험 살려 유학사기』 제하의 기사에서 「코리아 아카데미 유학원 이사장 최 씨가 불법해외유학 혐의로 경찰에 수배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신청인은 일정액을 받고 코리아 아카데미의 광고 모델과 학생들의 유학상담에 응했을 뿐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1서울중재27).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으며 정정보도를 거부,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유학 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유학이 불법적인 것임을 알았든가, 또는 유학 희망자들을 기만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

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와같이 판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1카65411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이 건 호, 장 건 상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신 우 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시 현

변론종결 : 1991. 10. 14.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선데이 서울」 제48면 전면의 사각 테두리 내에 중앙에는 4×5cm 규격의 신청인의 사진을신고 상단 중앙에는 제목 『정정보도문』을 특호 활자로, 그 여백에는 별지1. 정정보도문 내용을 9포인트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주문 제1항 중 게재할 정정보도문 내용을 별지2. 기재와 같이 하는 외에 나머지는 주문과 같다.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잡지인 1991. 4. 28.자 「선데이 서울」 제48면 및 제49면에 『아역스타 최 유학경험 살려 유학사기』라는 제목과 『미국서 대학졸업 후 귀국-중고생 불법 알선 혐의로 수배』, 『돈 챙겨 잠적』 『국가위신 실추』라는 소제목 아래 「엔터리 해외유학을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영화배우 최 」라는 설명문과 함께 신청인의 사진을 신고 「인기 여배우 최 (28)가 불법유학 알선업체의 이사장으로 사기행각을 해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중략) 서울시경은 지난 11일 해외유학 여권을 받을 수 없는 만 18세 이하 중고생 250명에게 미국 고등학교에 유학 알선해 주겠다며 10억 1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 등 관련자를 수사하게 된 것. (중략) CF감독 정모 씨(39·서울 강동구)에 따르면 (중략) 그가 나머지 돈을 받기 위하여 코리아 아카데미 사무실을 드나들던 중 최 가 어느새 그 곳의 이사장 직함을 갖고 학생들과 상담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다는 것. 최 는 이 회사에서 해외유학설명회를 유치, 주관해 오면서 미국에서 유학유치단이 오면 전국 호텔을 순회하며 그들을 인솔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정 씨는 최 로부터 코리아 아카데미의 이사장 직함이 찍힌 명함을 받았지만 언론계의 기자들은 코리아 아카데미의 강남지사장이라는 명함을 받았다고 한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수배된 최 가 경찰에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면 확실히 드러날 듯. 그녀는 미국에 건너가 있다가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략) 이렇듯 토플성적증명서등을 위조, 합법을 가장해 유학을 떠난 부유층 자녀들은 갈수록 성적이 떨어져 한국인의 위신을 실추시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지 동포들의 투서가 속속 한국으로 들어와 유학알선업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 코리아 아카데미의 유 씨는 경찰에서 최 씨가 인기인이고 실제로 유학을 갔다가 온 사람이므로 광고효과도 얻고 유학희망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모델로 썼으며 나중에 이사장 직함과 함께 월 150만원의 월급도 주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위 「선데이 서울」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이 인정됨에 따라 명백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 「선데이 서울」에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정정보도 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거나 또는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갑제3호증, 소갑제4호증의 1 내지 22, 소갑제5호증, 소을제1호증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강상철의 증언 및 기타 소명자료를 종합하면 신청외 유 는 국외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인데 교육법, 병역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는 사람의 경우 교육감의 유학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유학을 할 수 없음에도 1989. 1.부터 시행된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17세 미만자들의 경우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내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약 4주간의 단기어학연수과정
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미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출국하기만 하면 학업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허가
하는 학교가 있어 탈법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학을 원하는 중,
고등학생 및 학부형들을 상대로 마치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
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 알선하고 그 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여온 사실, 그런데 위 유 是 유학희망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1989. 2.경
미국유학경험이 있는 인기여배우인 신청인에게 위 회사에서 같이 일해 줄 것을 제의하였
고 신청인은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의 강남지사에서 근
무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강남지사장」이란 직함을 사용하였고 같은 해 말경 위 회사의
본사가 강남으로 이전한 후에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실, 신청인이 담당하
는 유학생모집광고를 내는 데 있어 광고모델의 역할을 하는 일과 위 회사를 찾아온 유학
희망자나 그 학부모를 상대로 신청인의 유학경험을 토대로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 미국의 교육제도, 어학공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해 주는 일이었고
그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월 금 15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 신청인은 약 40명 정도의 학
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 주었고 1990년 여름에는 위 회사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토론회
형 없이 미국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회
를 보면서 미국 대학관계자들을 안내하고 소개하였으며 통역을 담당한 일이 있고 같은 해
7. 하순 경에는 미국에 있는 엘리엇트 팝이라는 중, 고등학교에 약 30명의 유학희망자를 인
솔하여 안내한 일이 있는 사실, 이로 인하여 위 유 是 를 비롯한 위 회사관계자들과 신청
인은 1991. 4. 15. 여권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는 바 위 유
재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건의 유학을 알선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 같은 해 5. 18.자로 구속기소되었으나 신청인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위 회사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참고인인 신청의 유 是 (같은
혐의로 입건됨)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같은 날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실, 신청인은
1991. 3. 7.부터 3. 11.까지와 같은 해 4. 4.부터 4. 9.까지 두 차례 일본에 다녀온 일이 있을
뿐 경찰에 입건된 이후 잠적하거나 경찰에 의하여 수배된 일이 없고 위 유 是 가 기소된 2
건의 유학알선 행위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들을 직접 상담하거나 알선한 일이 없으며 위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월 금 150만원의 보수를 받는 이외에 유학상담자등으로부터 달리 돈
을 받은 일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과 신청인이 청구하

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비교하여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이 과연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지 신청인의 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

첫째, 신청인이 중고생의 불법유학을 알선하거나 사기행각을 해 온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의 강남지사장 또는 이사장이란 직함을 사용하여 유학희망자들과 상담하고 그들을 미국으로 인솔한 일이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유학이 불법적인 것임을 알았든가 또는 유학희망자들을 기만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불법」 유학을 알선하거나 사기행각을 한 일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사기혐의로 입건되어 수사중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여서 조만간 그 종국적 처분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므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소정의 추후보도청구 이외에 이 사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데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할 것이다.

둘째,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의 신문광고에 사진을 게재하는 일과 가끔 유학희망자에 대한 상담을 하여 주는 대가로 월 금 150만원을 받았을 뿐이며 달리 돈을 챙기거나 잠적한 바는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위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로부터 보수로 월 금 150만원을 받았을 뿐 달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과 신청인이 잠적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이 사실에 반하는 주장으로 볼 수는 없고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한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표현은 신청인은 그 이외에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학을 소개하는 세미나에서 사회를 본다든가 유학희망자들을 미국으로 인솔하는 일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부분 중 신청인이 한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표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셋째,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는 토플성적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회사가 토플성적 증명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는 신청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신청인으로서 위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별지1.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1991. 11. 15.

재판장 판사 정 지 형

판사 김 창 보

판사 최 중 갑

〈별지 1〉 정정보도문

1991. 4. 28.자 본지 제1157호 제48면 및 제49면에 『아역스타 최 유학경험 살려 유학사기』라는 제목과 『미국서 대학졸업 후 귀국-중고생 불법유학알선혐의로 수배』, 『돈 챙겨 참적』, 『국가위신 실추』라는 소제목 아래 「영터리 해외유학을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영화배우 최 」라는 사진 설명문과 함께 「인기 여배우 최 가 불법 유학알선업체의 이사장으로 사기행각을 해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경은 해외유학 여권을 받을 수 없는 만 18세 이하 중고생 250명에게 미국 고등학교에 유학을 알선해 주겠다며 10억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 등 관련자를 수사하게 된 것. CF감독 鄭모 씨에 따르면 최 는 미국에서 유학유치단이 오면 전국 호텔을 순회하며 그들을 인솔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토플성적 증명서등을 위조, 합법을 가장해 떠난 부유층 자녀들은 갈수록 성적이 떨어져 한국인의 위신을 실추시키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최 는 중고생의 불법유학을 알선하거나 사기행각을 해 온 사실이 없고 (주)코리아 아카데미의 신문광고에 사진을 게재하는 일과 가끔 유학 희망자에 대한 상담을 하여 주는 대가로 월 금 150만원을 받은 일은 있어도 달리 돈을 챙겨 참적한 바는 없으므로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 신청인

〈별지 2〉 정정보도문

1991. 4. 28.자 본지 제1157호 제48면에 『아역스타 최 유학경험 살려 유학사기』라는 제목과 『미국서 대학졸업 후 귀국-중고생 불법알선 혐의로 수배』, 『돈 챙겨 참적』, 『국가위신 실추』라는 소제목 아래, 「영터리 해외유학을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영화배우

최씨는 사진 설명문과 함께 「인기 여배우 최씨가 불법 유학알선업체의 이사장으로 사기행각을 해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경은 해외 유학 여권을 받을 수 없는 만 18세 이하 중고생 250명에게 미국 고등학교에 유학을 알선해 주겠다고 10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씨 등 관련자를 수사하게 된 것. CF감독 鄭모 씨에 따르면, 최씨는 미국에서 유학유치단이 오면 전국 호텔을 순회하며 그들을 인솔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토폴성적 증명서등을 위조, 합법을 가장해 떠난 부유층 자녀들은 갈수록 성적이 떨어져 한국인의 위신을 실추시키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최씨는 중고생의 불법유학을 알선하거나 사기행각을 해 온 사실이 없고 (주)코리아 아카데미의 신문광고에 사진을 게재하는 일과 가끔 유학 희망자에 대한 상담을 하여 주는 대가로 월 금 150만원을 받았을 뿐이며 달리 돈을 챙기거나 잠적한 바는 없고, 위 (주)코리아 아카데미는 토폴성적증명서를 위조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1991.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발행인 신 우 식

□

공익과 관련되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더라도, 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까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1. 15.자 판결(91카65412)

서울고등법원 1992. 8. 20.자 판결(91나64670)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1992년 8월 20일 신청인 최

씨와 경향신문사(週刊京郷)의 정정보도게재 청구소송 항소심에서「週刊京郷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의 기사에 의해 최씨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주간 경향에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다른 중앙 일간신문의 기사와 수사 기록의 일부 또는 수사관의 진술을 그대로 보도했을지라도 그것이 주간 경향에 공표된 이상, 이는 주간 경향의 사실적 주장이 됨으로 신청인이 반박할 권리를 갖게되며, 기사가 공익과 관련되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문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정보도청구권까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피신청인이 週刊京郷 1991. 4. 20.자 34~35면에『「미성년자 불법유학」알선회사 최씨는 월급쟁이 이사장』이라는 제목으로「코리아아카데미 유학원 이사장 최씨가 불법 해외유학 알선 혐의로 경찰에 수배되었다」고 보도하자, 신청인은 일정액을 받고 코리아아카데미의 광고 모델과 학생들의 유학 상담에 응했을뿐 유학알선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1서울중재29)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관련 기사에 의해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줄 의무가 있다」며, 신청인 주장을 인용하자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 항소했었다.

1審 判 決 文

사 건 : 91카65412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이 건 호, 장 건 상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심 상 기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경향」 제34면 전면의 사각 테두리 내에 중앙에는 4×5cm 규격의 신청인의 사진을 싣고, 상단 중앙에는 제목 『정정보도문』을 특호 고딕체 활자로, 그 여백에는 별지1. 목록기재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9포인트 본문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별지2. 목록기재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잡지인 1991. 4. 28.자 「주간경향」 제34면 및 제35면에 『「미성년자 불법유학」 알선회사 최 는 월급쟁이 이사장』이라는 제목 아래 신청인의 사진을 싣고 「미국내 브로커들과 짜고 한국의 중·고생들을 불법유학시켜 온 유학알선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11일 서울 시경은 …유 (44·코리아 아카데미 상무)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코리아 아카데미 대표 유 씨(31)와 이사장 최 씨(28)를 수배했다. 이들은 …무려 1백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영화배우·MC·탤런트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최유리 씨가 개입되어 있어 그 충격은 날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양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국으로 도망가 있어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위 「주간경향」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이 인정됨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 「주간경향」에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간경향」에 게재한 위 기사는 1991. 4. 11. 및 12. 자 7대 중앙 일간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을 참조하고 같은 달 13. 위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시경 경제과 수사관으로부터 직접 취재하여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 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사 피신청인이 게재한 위 기사가 다른 중앙 일간신문의 기사와 수사관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주간경향」에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주간경향」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

다 할 것이므로 그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은 인기 연예인의 행위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피신청인으로서 당시 대학 낙방생은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불법유흥알선업자에게 속아 유학하게 됨으로써 미성년자들의 불법유흥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재발치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위 기사를 보도한 것이지 신청인의 명예훼손을 위하여 고의로 허위 기사를 보도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그 기사내용에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인기 연예인으로서 외견상 위 불법유흥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듯이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기사가 공익과 관련되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권까지 봉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를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건 기사의 기본취지에 대한 반론이라 할 것이어서 그 반론내용이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중 「신청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 지금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1991. 5. 15.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자로 중재기일이 지정되어 출석요구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말미암아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강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기록송부축탁 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1991. 5. 23.자 중재기일에 불출석하여 같은 달 15.자 중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은 있으나 그후 이 사건 기사가 공표된 1991. 4. 28.로부터 중재신청기간인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같은 달 25. 다시 언론중재위원회에 같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중재신청을 하고 같은 해 6. 3.자 중재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중재가 불성립된 사실 및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위와 같이 제소 전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다음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중 「불법 유흥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갑제3호증, 소갑제

4호증의 1 내지 22, 소갑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신청의 유 는 국외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이하「위 소외회사」라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위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인데, 교육법·병역법·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는 사람의 경우 교육감의 유학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유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9. 1.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유화조치 이후 17세 미만자들의 경우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방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내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약 4주간의 단기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미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출국하기만 하면 학업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허가하는 학교가 있어 탈법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학을 원하는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을 상대로 마치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알선하고 그 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유 가 유학회망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1989. 2.경 미국유학경험이 있는 인기 여배우인 신청인에게 위 소외 회사에서 같이 일해 줄 것을 제의함에 따라, 신청인은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소외 회사의 강남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강남지사장」이란 직함을 사용하였고 같은해 말경 위 소외회사의 본사가 강남으로 이전한 후에는「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소외회사 명의의 종합일간지 신문광고등에 신청인을 이사장으로 표기한 사진을 게재하도록 허락한 사실, 신청인이 담당한 업무는 위와 같이 유학생 모집광고를 내는 데 있어 광고모델의 역할을 하는 일 외에도 위 소외 회사를 찾아온 유학회망자나 그 학부모를 상대로 신청인의 유학경험을 토대로 미국 내에서의 학교생활과 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 미국의 교육제도, 어학공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해주는 일 이었고 그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월 금 15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아온 사실, 신청인은 약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 주었고 1990년 여름에는 위 소외 회사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토폴시험 없이 미국 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미국 대학관계자들을 안내하고 소개하였으며 통역을 담당할 일이 있었고 같은 해 7. 하순 경에는 미국에 있는 엘리엇트팝이라는 중·고등학교에 약 30명의 유학회망자를 인솔하여 안내한 일이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위 유 를 비롯한 위 소외 회사 관계자들과 신청인은 1991. 4. 15. 여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는 바 유 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건의 유학을 알

선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사기죄를 적용, 같은 해 5. 18.자로 구속기소되었으나 신청인의 사기혐의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위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참고인인 신청외 유 (같은 혐의로 입건됨)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같은 날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실, 신청인은 1991. 3. 7.부터 3. 11.까지와 같은 해 4. 4.부터 4. 9.까지 두 차례 일본에 다녀온 일이 있을 뿐 경찰에 입건된 이후 미국으로 도망가거나 경찰에 의하여 수배된 일이 없고, 위 유 가 사기죄로 기소된 2건의 유학알선 행위에 대하여도 그 피해자들을 직접 상담하거나 알선한 일이 없으며 위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월 금 15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이외로 유학상담자들로부터 달리 돈을 받은 일이 없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신청인이 위 소외 회사의 강남지사장 또는 이사장이란 직함을 사용하여 위 소외 회사의 광고에 사진모델의 역할을 하고 유학희망자들과 상담하고 그들을 미국으로 인솔한 인정 사실만 가지고는 위 소외 회사의 유학알선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신청인이 알았던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음에 들어간다 할 것이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를 반박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만 국한되어 신청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은 정정보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정정보도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주문 기재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11. 15.

재판장 판사 정 지 형
판사 김 창 봉
판사 최 종 갑

〈별지 1〉 정정보도문

1991. 4. 28.자 본지 제1150호 제34면 및 제35면에 『알선회사 최 는 월급쟁이 이사장』

이라는 제목과 『미성년자불법유학』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울시경은 중·고생 불법유학과 관련하여 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유 씨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崔 씨(28)를 수배했다. 이들은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崔양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도망가 있어서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주)코리아 아카데미의 불법 유학사실을 알지 못하고 학생·부모에 대한 상담과 위 회사의 신문광고에 사진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월 금 150만원을 받았던 것이며 이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 지금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 신청인

〈별지 2〉 신청인이 신청한 정정보도문

1991. 4. 28.자 본지 제1150호 제34면 및 제35면에 『알선회사 최 씨는 월급쟁이 이사장』이라는 제목과 『미성년자 불법유학』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울시경은 중·고생 불법유학과 관련하여 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유 씨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崔 씨(28)를 수배했다. 이들은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崔양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도망가 있어서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崔 씨는 (주)코리아 아카데미의 불법유학사실을 알지못하고 학생·부모에 대한 상담과 위 회사의 신문광고에 사진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월 금 150만원을 받았을 뿐이며 이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 지금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1991.

주식회사 정향신문사 발행인 심 상 기

2審 判 決 文

사 건 : 91나 64670 정정보도게재

신청인, 피항소인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 현 석, 이 전 호, 장 건 상

피신청인, 항소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京鄉新聞社)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심 상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두 현, 최 윤 수

변론종결 : 1992. 7. 16.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1. 15. 선고, 91카65412 판결

주 문 :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경향」 제34면 전면의 사각 테두리 내에, 중앙에는 4×5cm 규격의 신청인의 사진을 싣고, 상단 중앙에는 제목 『정정보도문』을 특호 활자로, 그 여백에는 별 지2. 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9포인트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항소취지 : 원심판결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잡지인 1991. 4. 28.자 「주간경향」 제34면 및 제35면에 『미성년자 불법유학』, 『알선회사 최 는 월급쟁이 이사장』이라는 제목 아래 신청인의 사진을 싣고 「미국내 브로커들과 짜고 한국의 중·고생들을 불법유학시켜온 유학알선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11일 서울시경은... 유 (44. 코리아아카데미 상무)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코리아 아카데미 대표 유 씨(31)와 이 사장 최 씨(28)를 수배했다. 이들은... 무려 1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영화배우, MC, 탤런트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최 씨가 개입되어 있어 그 충격은 날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양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국으로 도망가 있어서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위 「주간경향」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위 「주간경향」에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가.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첫째, 피신청인이 「주간경향」에 게재한 위 기사는 1991. 4. 11 및 12.자 7대 중앙 일간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을 참조하고 같은 달 12. 오후 위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시경 경제과에 가서 수사기록 및 보도자료를 보고 수사관으로부터 직접 취재하여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 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사 피신청인이 게재한 위 기사가 다른 중앙 일간신문의 기사와 수사기록의 일부 또는 수사관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주간경향」에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주간경향」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 할 것이고 그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은 인기 연예인의 행위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피신청인으로서 당시 대학 낙방생은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불법유학알선업자에게 속아 유학하게 됨으로써 미성년자들의 불법유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위 기사를 보도한 것이지 신청인의 명예훼손을 위하여 고의로 허위 기사를 보도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그 기사내용에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인기 연예인인 신청인이 위 불법유학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보도한 위 기사가 가사 공익과 관련되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문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정정보도청구권까지 봉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를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건 기사의 기본취지에 대한 반론이라 할 것이어서 그 반론내용이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셋째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중 「신청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 지금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1991. 5. 15.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이 중재기일로 지정되고 그 기일의

출석요구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함으로써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2호증, 소을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1991. 5. 15.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의 기사내용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3.의 중재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신청인은 같은 달 25. 다시 언론중재위원회에 같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중재신청을 하고 같은 해 6. 3.의 중재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중재가 불성립되자 법원에 이 사건 정정보도게재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1991. 5. 15.자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중재신청은 신청인이 중재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그 후 이 사건 기사가 공표된 1991. 4. 28.로부터 중재신청기간인 1개월 내에 다시 언론중재위원회에 같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중재신청을 하고 중재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중재가 불성립되자 이 사건 정정보도게재의 신청을 한 것이니 이 사건 신청은 제소전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다음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넷째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제16호증의 4 내지 9, 11 내지 13, 15 내지 24, 26 내지 28, 소갑제4호증의 3 내지 39, 소갑제5호증,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소을제9 내지 14호증, 소을제16호증의 10, 14, 2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의 유 는 국외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위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인데, 교육법, 병역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는 사람의 경우 교육감의 유학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유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9. 1.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유화조치 이후 17세 미만자들의 경우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약 4주간의 단기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미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출국하기만 하면 학업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허가하는 학교가 있어 탈법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학을 원하는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을 상대로 마치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알선하고 그 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여 온 사

실, 그런데 위 유가 유학 희망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1989. 2.경 미국유학 경험이 있는 인기 여배우인 신청인에게 위 소외 회사에서 같이 일해 줄 것을 제의함에 따라, 신청인은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소외 회사의 강남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강남지사장」이란 직함을 사용하였고 같은 해 말경 위 소외 회사의 본사가 강남으로 이전한 후에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소외 회사 명의의 종합일간지 신문광고등에 신청인을 이사장으로 표기한 사진을 게재하도록 허락한 사실, 신청인이 담당한 업무는 위와 같이 유학생모집광고를 내는 데 있어 광고모델의 역할을 하는 일 외에도 위 소외 회사를 찾아온 유학희망자나 그 학부모를 상대로 신청인의 유학경험을 토대로 미국 내에서의 학교생활과 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 미국의 교육제도, 어학공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해 주는 일이었고 그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월 금 1,500,000원 정도의 보수를 받아온 사실, 신청인은 주 1, 2회 정도 소외 회사 사무실에 나와 1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위 1989. 2.경부터 1991. 3.경까지 약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 주었고 1990. 여름에는 소외 회사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토플시험 없이 미국 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미국대학 관계자들을 안내하고 소개하였으며 통역을 담당한 일이 있었고 같은 해 7. 하순 경에는 미국에 있는 엘리엇트 팝이라는 중·고등학교에 약 30명의 유학희망자를 인솔하여 안내한 일이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위 유를 비롯한 소외 회사 관계자들과 신청인은 1991. 4. 15. 여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는 바 같은 해 5. 18. 신청인과 위 유 등의 여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무 결정이 되었으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위 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건의 유학을 알선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사기죄를 적용, 같은 날 구속기소되었으나 신청인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참고인인 신청외 유 (같은 혐의로 입건됨)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같은 날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실, 그 무렵 신청인은 1991. 3. 7.부터 같은 달 11.까지와 같은 해 4. 4.부터 같은 달 9.까지 두 차례 일본에 다녀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소외 회사의 유학알선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알고 위 유의 사기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하였다는 점 및 신청인이 경찰에 입건된 이후 미국으로 도망하거나 경찰에 의하여 수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소울제1 내지 14호증, 소울제16호증의 4, 7, 8, 11, 19, 20, 21, 24, 26, 소울제17호증, 소갑제4호증의 29의 각 기재는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름이 없는 소갑제4호증의 12, 13, 16, 17, 27, 30 내지 37, 39, 소

갑제5호증, 소갑제6호증, 소갑제7호증, 소갑제8호증의 1 내지 3, 소갑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1981. 12.경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그 수속을 밟아 주어 알게 된 신청의 유 의 제의로 소외 회사의 광고모델 겸 상담원으로 일하고 월 1,500,000원씩을 받았을 뿐이고 그 명칭만 강남지사장, 또는 이사장(이사장 직함도 신청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이 사용하는 것을 수차례 만류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여 그냥 사용하도록 묵인하여 왔다)으로 되어 있었지 위 소외 회사의 유학알선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위 회사가 하는 유학알선행등의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또 위 소외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2건의 유학알선행위에 대하여도 그 피해자들을 직접 상담하거나 알선했던 일이 없으며 위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이외에는 유학상담자들로부터 달리 돈을 받은 바가 전혀 없으며, 위 기소중지되었던 신청인에 대한 사기사건에 대하여도 1992. 6. 26. 혐의무 결정이 된 사실, 신청인이 이 사건이 문제될 무렵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일본에 다녀 온 사실이 있을 뿐 경찰에 입건된 이후 미국으로 도망하거나 경찰에 의하여 수배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다만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를 반박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만 국한되고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인 피신청인 명의가 아니라 신청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정보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신청인 신청의 별지2의 정정보도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경향」 제34면 전면의 사각 테두리 내에, 중앙에는 4×5cm 규격의 신청인의 사진을 싣고, 상단 중앙에는 제목 『정정보도문』을 특히 고딕체 활자로, 그 여백에는 별지1 목록기재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9포인트 본문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8. 20.

재판장 판 사 안 문 태
판 사 강 용 현
판 사 김 상 호

〈별지 1〉 정정보도문

1991. 4. 28.자 본지 제1150호 제34면 및 제35면에 『알선회사 최 는 월급쟁이 이사장』이라는 제목과 『미성년자 불법유학』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울시경은 중·고생 불법유학과 관련하여 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유 씨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崔 씨(28)를 수배했다. 이들은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崔양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도망가 있어서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주)코리아 아카데미의 불법유학사실을 알지 못하고 학생·부모에 대한 상담과 위 회사의 신문광고에 사진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월 금 150만원을 받았던 것이며 이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 지금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 신청인

〈별지 2〉 신청인이 신청한 정정보도문

1991. 4. 28.자 본지 제1150호 제34면 및 제35면에 『알선회사 최 는 월급쟁이 이사장』이라는 제목과 『미성년자 불법유학』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울시경은 중·고생 불법유학과 관련하여 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유 씨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崔 씨(28)를 수배했다. 이들은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崔양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도망가 있어서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崔 씨는 (주)코리아 아카데미의 불법유학사실을 알지 못하고 학생·부모에 대한 상담과 위 회사의 신문광고에 사진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월 금 150만원을 받았을 뿐이며, 이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 지금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1991.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발행인 심상기

□

교내소요 무더기 징계 보도에 대해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보도에서 반박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正当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1991. 11. 20.자 판결(90카18577)

事實概要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윤재선 부장판사)는, 1991. 11. 20. 학교법인 영석학원이 경인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보도에서 신청인측에 반박기회를 주었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正当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며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의 주장 중 △교사를 임명할 때 정식교사로부터 미리 사직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 보도내용이 이미 임용된 교사로부터는 미리 사직서를 받아놓는다는 취지가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 17명을 무더기로 무기정학처분한 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이는 명백히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고 또 반박기회를 주었고, △강 교사의 해임은 일방적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는 강 의 말을 그대로 인용보도하면서, 이어서 학교측 입장을 보도 쌍방 당사자의 입장을 나뉠대로 보도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경인일보 1990. 11. 6.자 15면 『교내 소요 무더기 징계』 제하의 기사에서 「영석고등학교는 교사를 임명할 때 사전 사직서를 받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으며, 학내 민주화와 관련 학내 소요를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학생처장들을 징계처분하고 이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강세철 교사를 부당 해임 통보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했다.(90경기중재7)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0카18577 신문보도정정보도

신 청 인 : 학교법원 영석학원

의정부시

대표자 이사장 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여 달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인일보사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22-11

대표이사 임 상 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성 오, 장 성 근

변론종결 : 1991. 10. 16.

주 문 : 1.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피신청인 발행의 「경인일보」 제15면 우측 상단부분 중 세로 4단, 가로 약 10센티미터의 지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4호 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이름은 6호 활자로 그 좌측에 4단에 걸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 1. 원문보도내용

소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90. 11. 6.자 경인일보 15면 우측 상단에 『교내소요 무더기 징계』라는 제목 아래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석고등학교가 학내 민주화 요구와 관련, 학내소요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학생회장 이모 군등 3명을 퇴학처분하고 고모 군(2년)등 19명을 무기정학처분하는 등 무더기로 학사징계를 했으며 이 사태와 관련, 평소 학생들에게 의식화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강 교사를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이들 징계학생들에 따르면 평소 학교측이 교사를 임명할 때 사전 사직서를 받아놓는 등 전횡을 일삼아 오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다 지난 달 24. 학생 대표들이 모여 *학생중심의 학교를 만들어 줄 것 *교사들의 실질적인 권익신장 *학교재정의 부당지출 공개 등을 결의 학교측에 이를 전달하려 했으나 학교측이 집회를 막는 한편 26일 전격적으로 이군등 3명을 퇴학처분하고 양군등 2명을 무기정학에 처하는 한편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기 위해 27. 사전 모임을 가진 고군등 17명의 학생들을 추가로 무기정학처분했다는 것이다. 또 해고된 강 교사는 지난 6월초 1, 2학년 학생들에게 「터」, 「상록수」 등 일명 의식화노래를 가르치는 등 학교측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해오다가 이번 소요가 터지자 여기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육성희의 결의등 요식절차를 거쳐 일방적으로 3일 부당해임을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학교측은 징계학생들이 불법적 집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신분에 안맞는 행동을 해 어쩔 수 없이 징계 조치했으며 강 교사 해임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가로 6 내지 4센티미터 세로 4단 크기로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첫째, 위 기사 중 영석고등학교 교사를 임명할 때 정식교사로부터 미리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둘째, 학생회장인 이군등을 퇴학처분한 것에 대하여 학생들이 항의집회를 갖거나 학교에서 학생 17명을 무더기로 무기정학처분한 일이 없고, 단지 1학년생인 남 군 등 9명을 근신처분하였을 뿐이고, 셋째, 강 교사의 해임은 일방적인 해임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사실과 달리 보도함으로써 위 기사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위 영석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인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별지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도한 기사내용은 객관적으로 사실이므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결원된 교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신문에 공고를 내거나 사범대학에 추천을 요구하여 이에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인에게 이력서 등 교사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 나름대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우선 강사로 채용하고 정식교사로 채용하기에 앞서 경기도 경찰국에 신원조회를 의뢰하고 만일 결격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오면 다시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교사임용 신청을 내고 그 승인을 받으면 정식교사로 발령내는데 위 기간이 통상 2~3개월이 걸리므로 강사

하여 위 학교의 직원들로부터 3명의 학생이 퇴학처분 받았으며 다른 징계나 교사의 해임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 말미에 신청인측의 주장내용을 보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소갑제16호증의 1, 2, 소갑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다만 증인 고정석의 증언 중 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문기사와 정정보도를 청구한 이유 및 정정보도에 기재될 별지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신청인이 운영하는 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운영의 개선과 교권침해방지를 내세워 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려다 사전에 발각되어 주동자인 학생회장등 3명의 학생이 퇴학처분을 당하고 2명이 무기정학에 처해지는 한편 며칠 후 이를 논의하기 위한 2차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학생이 추가로 무기정학 또는 근신 처분을 당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적 핵심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대로 무기정학처분을 한 바 없다는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항의 집회를 가진 적이 없다는 부분은 피신청인의 원문기사에 의하더라도 「항의하는 집회를 갖기 위해 27. 사전 모임을 가진 고군등을 추가로 무기정학처분하였다」는 것으로 문면상 항의집회는 열지 못하였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피신청인이 보도한 내용을 곡해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이고 더구나 피신청인이 사전에 위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위 이 [] 이 신청인측의 직원을 만나서 신청인측의 주장 즉 학생들이 불법적 집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신분에 안맞는 행동을 해 어쩔 수 없이 징계조치하였다며 신청인측의 반박기회를 주고 이를 그대로 보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위 학생징계보도에 관한 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둘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강 [] 교사의 해임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소갑제4 내지 12호증, 소갑제 13호증의 1, 2, 14호증의 1, 2, 3, 4, 소을제6호증의 1, 2, 소을제9호증, 위 증인 []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영석고등학교의 음악교사인 소외 강 []은 1989. 6. 1. 위 고등학교의 음악교사로 부임한 후 그해 여름 경부터 교과 외의 내용인 「터」, 「상록수」 등의 노래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가 학부형들로부터 위 노래가 소위 운동권의 학생들이 데모를 할 때 부르는 건전치 못한 내용의 노래라면서 강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여 강 교사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위에서 본 학내사태에서 첫 번째 모임이 사전에 발각되어 학생회장등이 퇴학당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2차로 19

90. 10. 29. 월요조회시에 강 교사가 지도교사로 있는 밴드부의 학생들이 데모노래를 연주하면서 소요를 하려고 계획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자 위 고등학교의 육성회와 어머니회에서 위 강 교사에게 학내소요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강 교사는 지난번 소위 운동권노래를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은 잘못이나 이번 학내문제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변소하자 육성회와 어머니회에서는 더 이상 강 교사가 위 고등학교의 교단에 설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1990. 10. 31. 결의문을 다시 고등학교 교장에게 보내어 신청인은 1990. 11. 1. 위 강 교사에 대해 11. 3. 학교 회의실에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하였으니 출석하라는 통지를 보내고 11. 3. 10 : 30. 징계회의를 열고 강세철 교사가 1990. 6. 4. 시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동인이 관장하는 밴드부 학생이 주동이 되어 학내소요를 계획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징계를 요구한다고 하여 위 강 교사가 자신은 이번 학내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징계를 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징계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강 교사를 해임하기로 결의하여 위 강 교사가 해임된 사실, 위 강 교사는 위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90카5803호로 지위보전 및 급료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는 1991. 4. 9. 위 강 교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사건의 신청인)이 1990. 11. 3. 강 교사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해임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피신청인은 강 교사에 대해 1990. 11. 4.부터 위 판결선고시까지 매월 금 771,366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위 강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일방적인 해임조치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해임된 것임에도 위 기사에서는 신청인의 해임조치가 일방적인 조치인 것처럼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보도의 내용은 위 「강 교사는... 3일 부당해임을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고 되어 있어 이는 강 교사의 주장 즉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되었다는 것을 강 교사의 말 그대로 인용보도한 것이고 뒤이어 학교측의 입장 즉 강 교사의 해임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는 부분을 보도하는 등 쌍방 당사자의 입장을 나름대로 보도하고 있으며 위 보도내용의 취지는 비록 일방적으로 부당해임을 통보해왔다는 표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강 교사가 자신이 학교소요에 관련이 없음에도 관련이 있는 혐의를 두고 해고한 것은 그 비록 육성회의 결의등 징계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해임처분 그 자체 즉 해임처분의 사유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이지 육성회의 결의만으로 자신을 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해임하였다는 주장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와 별도로 그 해임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강 교사의 해임에 관한 원문보도내용은 신청인의 입장 즉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임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이라 할 것임에도 신청인이 제멋대로 이를 해석하고서 그에 대한 반박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이를 요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어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11. 20.

재판장 판사 윤 재 선

판사 한 명 수

판사 임 치 용

정정보도문

1991. 11. 6.자 일간지 경인일보 제15면에 『교내소요 무더기 징계』라는 제목하에 의정부시 용현동 산 33 영석고등학교가 학내 민주화와 관련, 학내소요를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학생회장 이모 군등 3명을 퇴학처분하고 고모 군(2년)등 19명을 무더기로 무기정학 처분하는 학사징계를 하였으며... 학교측이 교사를 임명할 때 사전 사직서를 받아놓는 등 전횡을 일삼아... 항의집회를 갖기 위해 27일 사전모임을 가진 고군등 17명의 학생을 추가로 무기정학처분하였다... 여기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강 교사에 대하여 육성회의 결의등 요식절차를 거쳐 일방적으로... 부당해임 통보해왔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영석고등학교에서 교사임용시에 사전 사직서를 징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고, 학생들이 항의집회를 하거나 위 학교에서 학생 17명을 무기정학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위 강 교사에 대하여는 일방적인 해임조치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해임된 것이므로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어린이들에게 운동권 의식을 심어주는 이른바
「문제교사」로 지칭된 신청인은 이 사건 사실보도에
대해 이미 상당한 반론권을 행사했으므로
정정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2. 2. 20.자 판결(89카8917)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여현 부장판사)는 1992. 2. 20. 최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방송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은 이미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상당한 반론을 행사한 이상 정정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도는 신청인의 사전 동의 하에 대담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사실보도에 관한 대담장면을 방영함으로써 신청인의 입장과 주장을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 후 신청인을 자신이 방영하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문제된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MBC-TV 1989. 5. 14. 21:00 뉴스센터시간에 보도된 『천방지축조의 담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서울 신방학국민학교 담임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방송사가 자신을 어린이들에게 운동권의 의식을 심어주는 이른바 「문제교사」로 지칭하면서, 신청인으로 인해 「신방학국민학교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고 보도하는 한편, 신청인이 취재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따라 1시간 30분가량 자신의 교육관 및 교육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이를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일부만을 발췌하여 왜곡하고, 허위사실까지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89서울중재30).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본건 보도내용은 취재기자의 개인적인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되지 않았으며 왜곡이나 과장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

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방송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신청인은 이와 함께 사과방송등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판결을 받았다.

判 決 文

사 건 : 89카8917 정정보도방송

신 청 인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용 환, 이 석 태, 김 형 태, 안 상 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진 국, 신 장 수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文化放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창 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후, 한 만 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 병 석, 함 영 주, 최 재 경

변론종결 : 1991. 11. 22.

주 문 :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그가 방송하는 문화방송에 별지1.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방송방법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위 정정보도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에게 매주 금 5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신청인은 1989. 3. 2.부터 서울

소재 신방학국민학교에서

담임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하는 방송법인인 사실, 피신청인은 1989. 5. 14. 21 : 00 텔레비전 뉴스센터 시간에 약 11분 20초에 걸쳐 『천방지축조의 담임』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당시 담임을 맡고 있던 신방학국민학교 의 학급 교육 활동에 관하여 신청외 엄 이 취제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동 보도의 도입부에 프로그램

진행자인 소의 손석희가 「교육이라는 것은 발전적인 변화를 추구하되 서서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이론의 하나입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가치관을 갑작스럽게 심어줄 때 거기에는 혼란이 따를 것이고, 먼 훗날 그 어린이가 오도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신방학국민학교를 배경으로 엄 기자가 화면에 등장하여 「이 학교는 지금 한 젊은 여교사 때문에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은 우리나라 국민학교 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라고 서두를 꺼낸 다음 「올해 살된 교사 최 씨가 부임과 동시에 학급담임을 맡은 지 보름도 안되는 지난 3월 14일부터 이 학교에 파문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숙제도 제대로 내주지 않고, 사회시간에는 이상한 내용의 수업을 하는 것 같다는 항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라고 보도함과 동시에 위 신방학국민학교의 교감인 소의 노 이 신청인에게 보낸 「사회시간에 교과내용은 잘 취급하지 않고 울산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로자 데모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의 말, 과제를 내주지 않는다, 김일성에게 편드는 듯한 내용의 말, 자녀를 다른 반으로 옮기고 싶다, 다른 반 아이들의 공부한 내용을 보면 부럽다라는 취지의 학부모로부터 항의전화가 왔으니 사실이면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와 「노 교감 선생님께 라는 제하의 위와 같은 학부모들의 항의는 사실이 아니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전화는 유언비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러면 교사 탄압 사례로 생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신청인의 반박편지를 낭독한 후, 신청외 엄 은 계속하여 「최 교사는 익명으로 된 전화는 교권침해와 교사탄압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상한 내용의 가사가 적힌 이른바 운동권에서 흔히 부르는 노래가 여러 어린이들의 일기장이나 약속장이라는 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급기야 4월 20일 학부모 29명은 최 교사에게 어린이를 맡길 수 없다는 탄원서를 관할 교육구청에 냅니다」라고 보도하고, 신방학국민학교 학부모 2명이 신청인이 교육한 노트 및 학급에 있는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신청인의 학습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신청인이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한 문 목사 북한방문 문제, 노사분규관계, 학생데모관계 등은 국민학교 과정에 부적합하고, 신청인이 담임하였던 의 특별활동 조 명칭이 괴상하며 신청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어린이를 맡길 수 없으므로 전화로 항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대담장면을 학부모들의 얼굴을 화면에 담지 않은 상태에서 방영하고, 다시 교실을 배경 화면으로 하여 신청외 엄 이 등장하여 「문제의 교실입니다. 책상은 물론 교실 전체가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칠판에는 내일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해서 풀어야 할 숙

제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보름전만 해도 이 교실의 분위기는 이렇게 않았습
 니다. 이 교실에서 이와 같은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1분단 2분단 같은 통상적인 분
 단 이름 대신에 말썽천재조, 핵폭탄과 유도탄조, 천방지축조 등등 기상천외의 이름이 사용
 되었습니다」라고 보도한 후, 신청인이 위와 같은 분단의 명칭은 학생들이 만화를 보고 나
 림대로 정한 이름일 뿐 신청인의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항변하는 내용의 대
 답장면을 방영하고, 「남북음악축전은 열려야 한다. 대통령이 선거때는 보통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문 목사가 통일에 대한 문제로 방북을 한 것
 인데 벌을 주면 옳지 않다」라는 내용의 학생들의 학습활동 자료를 낭독한 후 「최 교사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른 인물이었음이 학교 관계자가 찍어 놓은 사진들과 복사물들이 말
 해 주고 있다는 말과 함께, 「신청인은 교장을 규탄하는 소리, 또 게시물 끝부분에 연호를
 표기함에 있어 헤어져 살아온 45년 ○월 ○일이라 표기하고, 보안법이 어떻고, 자유당 때
 이승만 박사가 왕창 돈을 먹어 버렸다 라는 내용의 4·19 관계 만화, 기타 도시빈민 자포
 자기의 말, 경희여상 데모 찬양 등 내용의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학교 배면 칠판에 게시
 하였다」고 비난하는 신방학국민학교의 교장인 신청외 은 의 신청인에 대한 비난 대담
 장면을 방영하고, 이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한 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사
 회 동태성의 민감한 배양 기타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라는 사회과
 교육 목표에 따라 행하여진 것인데, 신문스크랩 내용은 이를 직접 지도한 바는 없고 단지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게시한 것일 뿐이라는 신청인의 반박 대담장면을 방영하고, 이어서
 신청외 엄 은 「결국 최 교사는 지난 달 25일 학교로부터 담임자리를 박탈당합니다」라
 는 말과 함께 신청인의 전 근무지인 방학국민학교의 학부모들이 신청인을 담임직에서 박
 탈한 신방학국민학교의 처사는 부당하다면서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보도와
 함께, 「신청인이 전 근무지에서 학생들에게 자연식품을 많이 권한다든가 외국산품을 사용
 하지 말라고 교육시키는 등의 교육활동을 보고 젊은 교사가 꽤기있게 교육을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였는데 깊은 내용은 잘모른다」는 취지의 신청인의 전 근무지인 방학국민학교
 의 학부모와의 대담장면과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던 신방학국민학교 학년주임
 교사인 신청외 황 이 「신청인이 참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신의 교직경력이 20년이
 되나 신청인과의 교육방식이 다르니 결국 자신이 참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밖에 되
 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담장면을 각 방영한 후, 문교부 장관 및 장학편수실장 방을 배경
 화면으로 하여 신청외 엄 은 「문교행정의 최고책임자들이 일선 국민학교 교단에서 무
 슌 일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과 함

게 「최씨는 에 알맞지 않는 교육의 시켰고 사회 전체가 합의를 본 교과내용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주장을 학생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내세워 학생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교육자 양성지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나 심지어 동료교사들은 최교사가 어떻게 교원자격증을 받았고 또 어떻게 임용되었으며 또 어떻게 담임까지 맡았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방영이라 줄여쓴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의 이 사건 텔레비전 보도프로그램인 9시(오후) 뉴스센터는 방송망을 타고 전국에 방영되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 사건 주장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므로 방송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매주 금 5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는 신청인의 사전 동의하에 대담등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별적 교육활동에 대한 사실적 관계에 대하여는 사실에 기초한 충실한 보도를 행한 것이고,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입장 및 그에 대한 해명 등의 대담장면이 이 사건 보도에 같이 방영됨으로써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반박권을 행사한 데다가, 신청인의 이 사건 보도에 나타난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보도 부분은 사실적 관계에 대한 보도가 아니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후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영하는 「박경재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신청인을 출연시켜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보도에 나타난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론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다룬다.

3. 정정보도 청구권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을 뒷받침 하는 기본적 요소로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여론형성에 미치는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의 피해는 참으로 큰 것이므로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피해자인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방송법 제41조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바, 위 방송법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법으로 방송에 대하여 반박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입

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보도내용을 진실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형식적 권리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정보도청구는 사실보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언론기관의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하는 보도에 대하여는 반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실보도에 관하여도 신청인의 권리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예컨대, 원문보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정정보도를 구하는 사항이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관련됨에 불과하거나, 언론기관 자신이 속보 등의 형식을 빌어 전의 보도를 충분히 정정하거나, 언론기관 스스로 피해자에게 별도의 반론 기회를 부여하였다거나, 요구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원보도와 다른 내용이 없거나 오히려 이의대상인 보도내용을 합리화하는 내용인 경우, 인터뷰등에 의한 충실한 보도가 있는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원문기사를 왜곡 해석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정정보도를 함으로써 오히려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등의 경우 기타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언론기관이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당원의 판단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건대, 우선 이 사건 방영은 다소 평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신청인의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사실관계를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이므로 방송법 소정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바 신청인이 위 보도로 인하여 법익을 침해당하였음을 전제로 그에게 반론권을 부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2호증(방송원고)의 기재와 이 법원의 각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를 방영하기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동인의 교육활동에 관한 대담형식의 녹화방영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서 이 사건 방영을 하게 된 것이고 방영내용된 피고측 질문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단명칭은 학생들이 만화책등에서 따라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분단의 명칭을 붙였고, 문익환 목사의 방북문제, 남북음악축전 등을 토론 학습의 소재로 선정하고 기타 신문기사등을 스크랩하여 교실 배면 칠판에 게시한 것은 학생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사회동태에 대한 민감성을 배양시켜 주고 기타 가치관의 올바른 형성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회과 교육목표에 따라 이를 실시하였던 것이며, 위와 같은 교육 소재에 대하여 신청인은 특정한 목표에 따라 지도한 바 없이 단순히 토론의 주제로 삼거나 게시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의 반박 대담장면을 그대로 방영하였던 사실, 피신청인은 그후 신청인으로

부터 이 사건 보도에 대한 항의를 접하고 1989. 5. 26. 피신청인이 방영하는 「박경재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신청인 및 현직 교사로서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동조하는 신청외

와 신청인이 근무하던 위 신방학국민학교 관할 교육구청인 북부교육구청의 학무과장 신청외 및 당시 현직 교사로서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비교적 비판적인 신청외

을 각 출연시켜 「무엇이 참교육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위와 같은 교육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바르게 알아서 민주주의의 정착과 함께 분단민족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자기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위 사람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해 주기 위하여 교과목표와 관련된 사회현상들, 예컨대 문 목사 방북문제, 지하철 노사 파업 사태, 대통령 등에 대하여 토론수업을 실시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TV 뉴스나 신문을 보도록 지도하였으며, 위와 같은 시사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한 수업은 사회시간에 실시한 토론수업의 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토론결과 또한 찬성과 비판의 다양한 견해가 도출되었으며, 신방학국민학교 학부모들 연명의 진정서에 서명한 사람 중 일부는 신방학국민학교 학부모가 아니었다거나,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서력기원 대신 「헤어져 살아온 45년 ○년 ○일」의 연호를 개인적 차원에서 사용하였고, 신청인은 천편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숙제를 지양하고 학생들 각자의 학습능력에 따른 차별과제를 부과하였으며, 이 사건 신청인이 담임하였던 교실의 배면 칠판에 게시하였던 「미완의 4·19」라는 제하의 만화는 「이야기한국사」에서 발췌한 것이고,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일요일이 다가오는 소리」 「도깨비 뽀스」 등의 노래는 문공부의 심의를 거쳐 음반으로 제작 배포되고 있는 노래로서 그 가락이 경쾌하고 흥겨운 노래이며, 신청인이 신방학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위와 같은 수업은 불과 한달여에 걸친 것으로서 그 결과를 선불리 논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실시한 위와 같은 교육활동은 세칭 「의식화교육」이 아닌 「참교육」이라는 취지의 의견 및 주장을 방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는 신청인의 사전동의하에 대담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사실보도에 관한 대담장면을 방영함으로써 신청인의 입장과 주장을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 후 신청인을 자신이 방영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문제된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청인은 이를 통하여 위 보도에 대한 반론권으로서 이 사건 신청취지 별지2 목록 기재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반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 이외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위와 같은 교육활동에 대

하여 마치 어떠한 경향성이 있었던 것으로 이를 평가하여 보도한 부분은 피신청인의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사실보도가 아닌 이상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달리 신청인의 교육활동을 잘못 평가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반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이 사건 신청취지 위 목록기재 ①항 및 ⑪항은 사실적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이라기보다는 신청인의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등에 관한 피신청인측의 의견보도에 대한 것이고, 일부 사실보도에 대한 반론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도의 주된 내용인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수적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이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이 신청인이 이미 이 사건 사실적 보도에 대하여 상당한 반론권을 행사한 이상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 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인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2. 20.

재판장 판사 윤 여 헌
판사 전 오 영
판사 오 종 윤

〈별지 1〉 정정보도문 방송방법

1. 이 사건 판결문의 송달후 첫번째 일요일 21:00에 방송되는 문화방송텔레비전(MBC) 「뉴스데스크」의 정규 뉴스방송이 끝난 직후 광고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정정보도문」이라는 글씨를 화면 중앙 상단에 큰 글씨로 가로 표기하고, 그 다음줄에는 「1989년 5월 14일 뉴스센터」라는 글씨를, 그 다음줄에는 「천방지축조의 담임」이라는 글씨를 각각 시청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명조체 글씨로 화면 가운데에 가로로 표기하여 5초간 음향없이 송출함으로써 정정보도문이 방송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2. 이어서 직전의 뉴스데스크를 방송한 진행자가 별지 제2목록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뉴스데스크의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제목부터 읽어 방송하는 동시에 화면 상

이들에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을 위하여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 외에 어린이들의 수준에 알맞다고 생각되는 노래와 전통민요를 가르쳤습니다. 최 교사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친 노래는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아침이슬, 상록수 외에 춤백이, 캠프의 노래, 찔레꽃, 냉면, 진달래꽃 처녀, 포장마차, 감자꽃 등 10여곡입니다.

4. 1989년 4월 20일 최교사에게 어린이를 맡길 수 없다는 이유로 「29명의 학부모」 명의 로 제출된 진정서에는 실제로는 27명만이 서명을 하였고 그중 최 교사의 학교에 있는 어린이의 부모는 15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들로부터 권유를 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반 또는 다른 학급에 다니는 어린이의 학부모들이거나 학부모가 아닌 이웃사람들입니다. 또 이 진정서가 제출된 후 1988년까지 최 교사가 담임을 했던 학급의 학부모 70여명이 최 교사의 담임박탈이 잘못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1989. 4. 26. 신방학국민학교 교장이 소집하여 열린 학부모회의에서는 최 교사 학급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모두 최 교사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최 교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항의한 일도 있습니다.

5. 최 교사는 사회시간에 교과서의 내용에 따라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5학년 1학기 사회과목이 정치·경제를 가르치는 과정인 점과 문교부가 발간한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사회 5-1의 내용을 참작하여 사회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의 기사를 조별로 나누어 읽고 토론하게 하였으며 어린이들의 자율적인 토론내용을 서로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6. 당시 최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읽어야 할 일간신문을 제시해 주었을 뿐 구체적인 주제에 대하여는 지시한 바가 없고 어린이들이 자기가 속한 조의 친구들과 의논하여 읽고 토론할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아홉개의 조 사이에도 구체적으로 읽고 토론한 신문기사의 주제가 서로 달랐습니다. 어린이들이 토론한 주제 가운데에는 남북음악회, 대통령의 시청방문, 문 목사의 북한방문, 지하철 노조의 무임승차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그룹이나 학생데모관계, 그밖의 노사분규관계는 주제 가운데에 포함된 일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조별로 읽은 일간신문은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 여덟개의 시중 일간신문입니다. 토론의 과정과 내용은 어린이들의 자율에 맡겨졌고 최 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리도록 강요하거나 암시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또 토론된 주제에 대하여 어린이는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평가를 자유롭게 내렸으며 하나의 확실적인 의견을 가지게 되거나 표시한 일은 없습니다.

7. 교실의 환경정리는 학교에서 제시한 지침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같은 학년의 다른 동료교사들과 의논하여 자율적으로 하였습니다. 최 교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만든 환

경정리란은 교실 뒷면 가운데 칠판에 한국의 인물평전, 과학학습, 이달의 역사, 이달의 행사, 시와 노래, 다같이 읽는 동화, 밤하늘의 별처럼, 이웃사람들, 교사도 일기를, 시대의 아픔, 교사의 기쁨, 종알종알 등의 난을 배치하고 그 양쪽으로 어린이들의 글쓰기 작품을 붙였습니다.

8. 글쓰기 작품란은 학급에 속한 모든 학생별로 고정란을 만든 다음 일주일에 한번씩 어린이들이 겪은 일이나 자연환경의 변화 등을 주제로 글을 쓰게 하고 자기의 작품을 해당 난에 계속 붙여 나감으로써 모든 어린이가 자기 글쓰기의 변화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모두 읽고 감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약 6주일 동안 학급 전체 어린이들이 쓴 300편 이상의 작품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 중에 아침조회시간에 장난하는 어린이를 교장선생님이 불러내어 심하게 나무란 사건에 대하여 어린이의 솔직한 느낌이 표시된 글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내용도 「교장을 규탄하는 소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최 교사가 그러한 작문을 따로 붙여 놓은 것은 아닙니다.

9. 최 교사는 국민학교 학년의 수준에 맞는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이 헤어져 있음을 일깨우기 위하여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쓴 편지 및 「교사도 일기를」이라는 환경정리란에 붙여 놓은 최 교사의 일기에 「헤어져 살아온 45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로서 공식적인 문서에 쓰거나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쓰라고 요구한 일이 전혀 없으며 어린이들도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일부는 그러한 표현을 따라 쓰기도 하였고 또 쓰지 않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10. 최 교사는 환경정리란에 4·19를 주제로 한 만화의 평화신문 등에 난 기사를 오려붙인 일이 있습니다. 그중 4·19에 관한 만화는 4·19주년을 맞아 신방학국민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이야기 한국사」 10권 중 4·19에 관한 내용을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 만화로 그린 것이며 신문의 기사는 「우리의 정의로운 경희여상 아이들」 등으로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거나 올바른 교육을 모색하는 내용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테모를 찬양한다든가 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1. 최 교사는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경기국민학교의 강사를 거쳐 서울 방학국민학교에서 4년간 교과담당 및 담임교사로 근무하다가 신방학국민학교로 전보되었으며 교육을 하는 가운데 교육과정의 테두리안에서 어린이들을 밝고 자율적으로 키우는 것 외에 어떤 「특정목적」을 가진 일이 없고 어린이들에게 「사회 전체가 합의를 본 교과내용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주장을 강요」한 일이 없습니다. □

신청인이 소유 임야를 매각하면서 지목변경 조건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있다

부산지방법원 1992. 8. 18.자 판결(92가1386)

事實概要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재판장 한기춘 부장판사)는 1992. 8. 18. 김재광 전 국회 부의장 비서관인 이 씨가 경상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이 일부 이유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경상일보 1992. 1. 3.자 15면 『중앙 고위층 결탁여부 수사 대립 사기분양 20억 「로비자금」 사용 가능성』 제하의 기사와 1. 4.자 15면 『울산군 공무원 소환조사』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산림보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목변경해 준다는 조건으로 자신 소유 임야를 시세보다 비싸게 대림건설에 매도한 후 지목변경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도되자, 신청인은 유언비어를 마치 국가기관에서 수사한 결과인 양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 했었다(92경남중재1).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무혐의로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정정보도하겠다고 주장, 중재불성립되자, 신청인이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 했다.

決 定 文

사 건 : 92가1386 정정보도

신 청 인 : 이

경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홍

피신청인 : 경상일보사

울산시 남구 신정1동 635의 9

대표자 이 동 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환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경상일보」 사회면 기사란의 하단에 가로 약 19센티미터, 세로 2단의 크기로 별지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 활자로서 위쪽에 가로로, 정정보도 내용은 13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서 그 옆과 아래쪽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8. 18.

재판장 판사 한 기 춘

판사 이 수 용

판사 이 승 호

정정보도문

본보 1992. 1. 3.자 및 같은 달 4일자 사회면에 대림건설 아파트 사기 분양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지주이던 김재광 전 국회의장의 비서관인 이 씨가 산림 보전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목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소유 임야 1만2천여평을 대림건설에 시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매도한 후 지목변경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위 이 씨가 자신의 소유 임야를 대림건설에 팔았다는 사실 외에 위와 같이 지목변경을 받아준다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 지목변경건의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광고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이라 볼 수 없고 신청인이 그 광고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9. 15.자 판결(92카기474)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1992. 9. 15. 신 씨가 京鄉新聞社 등 8개 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광고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이 아니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고는 언론기관이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해 주는 광고주의 주장에 불과할 뿐 언론기관이 여론의 형성등을 목적으로 공표한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신청인이 그 광고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京鄉新聞 등 7개 신문 1992. 6. 10.자 1면 하단과, 東亞日報 6월 11일자 1면 하단에 게재된 민주당 정책 광고에 의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정서생활상의 저항과 불쾌감을 느끼는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

담당 중재부는 법원의 기각이유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고,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 신청기각결정을 받은 것이다.

決 定 文

사 건: 92 카기 474 정정보도

신청인: 신

서울

(정치공해추방 캠페인)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최 종 룰

2.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윤 형 섭

3. 주식회사 세계일보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

대표이사 박 보 희

4.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 재 국

5. 주식회사 한겨레신문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의 25

대표이사 김 명 걸

6.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의 16

대표이사 조 용 우

7.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병 관

8.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 두 표

주 문 : 1.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판결이 송달된 후 피신청인들이 최초로 발행하는 경향신

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각 1면 하단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안)을 별지2 기재 신청외 민주당의 『지방예산을 4조 2천억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문과 같은 판형, 같은 크기, 같은 활자체로 게재하라.

이 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그들이 발행하는 1992. 6. 10.자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중앙일보의 각 1면 하단에,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그가 발행하는 같은 달 11.자 동아일보의 1면 하단에, 신청외 민주당의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제목의 별지 2 기재 광고문을 각 게재하였는 바, 위 광고문은 허위 내용의 광고로서 위 광고문의 공표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정서생활의 저항과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안)의 게재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중략)...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신청인들이 게재하였다는 신청외 민주당 명의의 위 광고가 위 법에 정한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광고는 언론기관이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해 주는 광고주의 주장에 불과할 뿐, 언론기관이 여론의 형성 등을 목적으로 공표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데다가, 광고는 언론 기관이 광고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고 이를 게재해 주는 것임에 반하여 정정보도는 이를 무료로 게재해 주어야 하는 것이어서 이른바 대등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의 게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광고주 또는 언론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광고 자체를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위 광고의 공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에서 말하는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6. 1. 28.선고, 85 다카 1973 판결 참조), 신청인이 위 광고문에서 지명된 바 없음은 위 광고문 기재 내용에 의하여 명백하고, 또 신청인이 그 광고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불 필요 없이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15.

□

재판장 판사 정 지 형

판사 이 태 섭

판사 이 광 만

남원시 의회의원인 신청인들이 토지 이용계획에 관여,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

전주지방법원 1992. 10. 29.자 판결(92카기50)

事實概要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흥기 부장판사)는 1992. 10. 29.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전북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남원시의 도시계획에 특혜의혹이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남원시 의회 의원들이 정정보도를 요구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간접적으로 여론의 이름을 빌어 오해할 소지가 있는 형식으로 행하는 보도태도는 무책임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들의 사건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전북일보 1992. 6. 11.자 13면 『남원시 도시계획에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남원시 의회 의원들이 토지이용계획에 관여하여 특정지역과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관계 공무원

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되자, 남원시 의회는 공식 주례회의에서 남원시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했다(92전북중재7).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시의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도시과장에게 직접 도시계획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목격,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어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전주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2카기50 정정보도

신 청 인 : 1. 김

남원시

2. 김

같은 시

3. 김

같은 시

4. 공

같은 시

5. 조

같은 시

6. 오

같은 시

7. 김

같은 시

8. 윤

같은 시

9. 최

같은 시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전 봉 호

피신청인 : 주식회사 전북일보사(全北日報社)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10의 5

발행인 서정상

심문종결 : 1992. 10. 8.

주 문 :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1992. 6. 11.자 전북일보 제13면에 게재한 『남원시 도시계획 특혜의혹, 일부 의원들 지나친 간섭』이란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정보도하라.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이 유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92. 6. 11.자 전북일보 제13면 기사란에 『남원시 도시계획에 특혜의혹』이라는 제목과 『일부 의회의원들 지나친 간섭』이라는 소재목 아래 「특히 시의회 의원들은 비공식 개별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관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을 특정지역과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 직, 간접 압력을 행사해 오면서 공익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할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먹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들은, 남원시 의회 의원 공식 주례회의에서 남원시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도시계획안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이 특정지역과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지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으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이의 정정을 구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본 사건 기사 중 사실적 주장은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그 진위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청구의 당부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나아가 그 진위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안은 1990. 12.경 주민과 시의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가 마쳐져 그 확정절차만 남았었는데 확정 전 남원시 의회 의원들에 의해 3차례에 걸쳐 그 안이 수정됨으로써 당초 예정했던 일정보다 6개월 이상이나 지연되었고 몇몇 의원들은 법정절차를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남원시 도시과장에게 직접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함으로써 그 계획안의 확정을 기다리는 남원시 시민들 사이에서 시의회 의원들이 특정지역과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직, 간접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에 찬 여론이 형성되자, 피신청인은 이를 기사화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거나 잘못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신문은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자신의 올바른 견해를 공표하여 건전한 여론을 형성시키는 데에 그 책임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그가 수집한 남원시 의회 일부 의원들의 도시계획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그에 따른 도시계획안 확정지연이라는 기사거리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여론의 이름을 빌어 일부 시의회 의원들이 공익에 반하고 특정인의 사익만을 위하여 시당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는 내용의 「...비판이 있다」는 전문형식의 보도 태도는 다소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실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도태도가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기는 하나 피신청인의 위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29.

□

재판장 판사 이 홍 기

판사 김 영 성

판사 오 재 성

신청인이 수입제한품목인 호주산 천연벌꿀을 수입,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1. 26.자 판결(92가77904)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1992. 11. 26. 벌꿀수입업자인 성

씨가 농민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에서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며,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산내역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농민신문 1992. 5. 1.자 『별꿀 불법수입 단속 시급』 제하의 기사에서 「선진물산(대표 성)이 수입제한품목으로 되어 있는 호주산 천연별꿀을 국내에 들여와 터무니 없이 비싼 값에 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되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2서울중재70)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한국양봉협회가 관세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근거한 사실보도라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2카77904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성

서울

송달장소 : 서울

피신청인 : 사단법인 농민신문사

서울 종로구 종로1가 36

대표자 이사 한 호 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경 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백 수

주 문 :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이 송달된 후 피신청인이 최초로 발행하는 농민신문의 제4면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 중 제목 『정정보도문』을 본문기사 제목의 활자크기로, 그 내용을 본문 활자크기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이 유: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특수일간신문인 1992. 5. 1.자 농민신문의 제4면 우측 하단에 『벌꿀 불법수입 단속 시급』이라는 제목과 『호주산 변칙으로 들여와 폭리』라는 소제목 아래 「수입제한품목으로 묶여 있는 외국산 천연벌꿀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량 불법 수입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호주 시드니에서 <골든넥타>(리얼레자우드 허니)라는 상표가 붙은 호주산 천연벌꿀 1t(2kg들이 5백개)이 항공편으로 김포에 들어왔음을 확인했으며... (중략) 특히 벌꿀수입업자들은 외국에서 벌꿀을 탁송할 때 국내 수취인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 기재토록 한 다음 국내 도착 후에는 한 사람이 모두 찾아가는 변칙적인 수입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방법도 주로 연고가 있는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개별 방문해 판매하는 점조직 형태의 외관형식을 취하고 있어 국내 양봉농가의 피해는 물론 벌꿀유통질서마저 크게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벌꿀수입업자들은 또 수입벌꿀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진물산(대표

의 경우 호주산 천연벌꿀제품

<골든넥타> 2kg들을 국내산의 2배, 호주 현지 값의 6~7배에 달하는 4만원씩에 팔고 있다고 한국양봉협회측은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총 2단 73행에 걸쳐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2. 5. 1.자 피신청인의 신문보도에 대하여 14일이 지난 같은 달 29.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간신문의 경우 피해자는 분쟁된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고(위 법 제16조 제1항), 정정보도청구권이 있는 자 또는 그 상대방은 분쟁된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1월(제16조 제1항의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위 법 제18조 제1항)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때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분쟁된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라고 할 것이므로(위 법 제18조 제1항), 1992. 5. 1.자 피신청인의 신문보도에 대하여 같은 달 29.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신청인의 중재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청인이 위 기사 중 「수입제한품목으로 묶여 있는 외국산 천연벌꿀이 변칙적인 방법으

로 대량 불법 수입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벌꿀수입업자들은 외국에서 벌꿀을 탁송할 때 국내 수취인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 기재토록 한 다음 국내 도착 후에는 한 사람이 모두 찾아가는 변칙적인 수입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방법도 주로 연고가 있는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개별 방문해 판매하는 점조직 형태의 외판 형식을 취하고 있어 국내 양봉농가의 피해는 물론 벌꿀 유통질서마저 크게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벌꿀수입업자들은 또 수입벌꿀을 터무니 없이 비싼 값에 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진물산(대표

의 경우 호주산 천연벌꿀 제품 <골든넥타> 2kg들이를 국내산의 2배, 호주현지값의 6~7배에 달하는 4만원씩에 팔고 있다고 한국양봉협회측은 주장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 2kg들이 호주산 벌꿀의 경우 수입가격이 1kg당 미화 12불로서 한화로 는 약 19,200원이 되고 여기에 관세 3,840원(19,200×20%), 항공 운송료 8,000원, 통관수수료, 인건비 및 통신비 등 부대비용 10,000원을 모두 합하면 금 41,040원으로서 위 기사에서 말하는 판매가격 40,000원보다 더 높고, 신청인은 위 호주산 벌꿀에 대한 관세를 모두 납부하고 적법하게 수입하였으므로, 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으로 「선진물산

이 수입벌꿀을 터무니 없이 비싼 값에 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확인 결과 오보임이 밝혀졌습니다. 선진물산은 벌꿀을 대량 수입했거나 불법 유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하는 위 정정보도문은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여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소갑제2호증(국제건강산업전시회 팜플렛), 소갑제3호증, 소갑제7호증(각 오퍼시트), 소갑제4호증(운임표), 소갑제5호증(영수증), 소갑제6호증(사업자등록증), 소갑제8호증(수입면장), 소갑제9호증의 1, 2(각 사진), 소을제4호증의 1(진정서), 2(명함), 3(사진), 소을제4호증의 1(세금계산서), 2(지불증), 소을제6호증의 1, 2,(품목별수출입요령 책자 표지 및 내용), 소을제7호증의 1, 2(각 신문), 소을제8호증(진정서에 대한 회신), 소을제9호증의 1, 2(국제건강산업전시회 책자 표지 및 내용), 소을제10호증(출품신청서), 소을제11호증의 1, 2(무역통계월보 표지 및 내용), 소을제12호증의 1(진정서에 대한 중간통보), 3(조사결과보고), 4(편지봉투), 5(진정서), 6(조사보고), 7(수출입공고사본), 8 내지 18(각 수입신고 내역조회), 19(수입신고서 사본), 20(경위서), 21(무환수입물품 과세가격조정)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이종순의 증언에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빌딩 904호에서 선진물산이라는 상호로 도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신청인은 축산업협동

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는 수입할 수 없는 수입제한품목인 천연벌꿀을 위 중앙회의 추천 없이 수입할 목적으로 1992. 3. 11. 호주국 시드니 소재 신청외 이 발송한 호주국 벌꿀 88kg을 위 이 이 국내 거주 친척들에게 발송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해 3. 18.부터 4. 7.까지 사이에 신청외 민 외 10명 명의로 각 8kg씩 분산하여 소정의 관세(뒤에서 보는 과세가격의 20%)를 납부한 후 통관한 사실, 신청인은 같은 해 3. 22.에는 위 이 발송한 같은 벌꿀 48kg을 신청인이 1992. 6. 4.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6회 국제건강산업전시회에 전시용으로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라고 신고하여 위 중앙회의 추천을 면제받고 위 벌꿀 48kg을 수입한 사실, 그런데 신청인이 위 전시회에 출품신청한 전시용 물품은 위 호주산 천연벌꿀이 아니라 수입자유화 품목인 호주산 로얄젤리 제품이었던 사실, 신청인은 위 전시회에 호주산 로얄젤리 제품을 전시하면서 위와 같이 수입한 호주산 천연벌꿀 136kg 중 극히 일부를 위 전시회에 같이 출품하였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벌꿀은 이를 국내에서 2kg들이당 금 000원 정도에 판매한 사실, 한편 신청인이 수입한 위 천연벌꿀의 호주 현지 가격은 1kg당 호주화 5불 정도로서 한화로 금 2,730원 정도(호주 1불의 1992. 10. 24. 현재 전신환 매도율은 545.37원이다)이고, 항공운송료는 1kg당 4,000원 정도이며, 위 수입가격에 운송료등을 포함하여 결정되는 천연벌꿀에 대한 관세부과 과세가격은 1kg당 미화 12불(한화 약 금 9,324원)로서 신청인은 위 1992. 3. 22. 수입한 벌꿀 48kg에 대하여 총 89,510원($9,324\text{원} \times 48\text{kg} \times 20\%$)의 관세를 납부한 사실, 따라서 2kg들이 벌꿀의 경우 수입가격과 운임 및 관세를 모두 합하여도 금 17,190원($((2,730\text{원} \times 2) + (4,000\text{원} \times 2) + (89,510\text{원} / 24))$)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수입제한품목인 위 천연벌꿀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 없이 발송자의 국내 거주 친척들이 수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통관하거나 또는 전시회 출품 목적으로 가장하여 위 중앙회의 추천을 면제받고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호주산 천연벌꿀을 불법, 변칙적으로 수입하여 국내 유통시켰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천연벌꿀의 매입원가에 관하여서도 호주 현지가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kg당 호주화 5불로서 한화로 금 2,730원 정도에 불과함에도(따라서 위 기사에서 신청인이 2kg들이 호주산 천연벌꿀을 호주 현지값의 6~7배에 달하는 금 40,000원씩에 팔았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관세부과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1kg당 미화 12불을 호주 현지 가격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관세 3,480원($12\text{불} \times 2\text{kg} \times 20\%$)을 가산한 다음 다시 호주에서 김포까지의 운송료 8,000원 및 통관수수료, 인건비 등 부대비용 10,000

원을 합산하여 위 2kg들이 벌꿀의 매입원가는 금 41,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같은 계산 내역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허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은 앞서 본 수입가격, 운임, 관세 등을 모두 합한 2kg당 금 17,190원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인건비등 부대비용 10,000원(신청인 주장과 같이 통관수수료, 인건비 등으로 금 10,000씩이나 소요될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금 27,190원 정도인 위 벌꿀 2kg들이를 금 40,000원 정도에 판매한 이상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셈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는 「선진물산(대표)이 수입벌꿀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확인 결과 오보임이 밝혀졌습니다. 선진물산은 벌꿀을 대량 수입했거나 불법 유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은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26.

재판장 판사 정 지 형
판사 이 태 섭
판사 이 광 만

별지(정정보도문)

농민신문 1992. 5. 1. 자 4면에 보도된 『벌꿀 불법수입 단속 시급』 제목의 기사 중 선진물산(대표)이 수입벌꿀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확인 결과 오보임이 밝혀졌습니다.

선진물산은 벌꿀을 대량 수입했거나 불법 유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보도 신청인

□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북한의 대남적화노선
추종집단이라는 보도는 기자의 주관적 판단 내지
의견이고,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1.26.자 판결(92카기649)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1992. 11. 26.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와 동위원회의 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이 씨가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에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원문기사는 기자의 주관적 판단 내지 의견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할 것이고,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고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해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서울신문이 1992. 6. 27.자 18면 『국내외 망라한 북의 「主思」 추종집단』 제하의 기사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재야운동권의 친북성향인사들인 이른바 주사파 계열에 의해 장악되어,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신청인은 이 기사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음해하고, 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했다(92서울중재133).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2카649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1.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

서울

대표자 위원장 직무대행 강

2. 이

충북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중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윤 형 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주 문 : 1.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이 송달된 후 피신청인이 최초로 발행하는 서울신문의 초판부터 게재당일자 최종판까지 제18면 좌측 상단 부분 지면에 가로 2.4센티미터, 세로 18.5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 기재 정정문 중 제목『범민련 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고딕체 영호 활자로, 제목 좌측에 위 정정문 중 소제목 1『자민련이 국내외 망라한 북의 주사 추종집단은 오보』를 세로로 명조체 초호 활자로, 그 좌측에 위 정정문 중 소제목 2『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에 따라』를 세로로 명조체 초호 활자로, 그 좌측에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들 성명을 본문 초호 활자로 7단에 걸쳐 게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신문의 1992. 6. 27.자 제18면 우측 상단에『국내외 망라한 북의 「주사」 추종집단』이라는 제목과『「범민련」의 정체와 목표』라는 소제목 아래「범민족대회를 위한 범민련의 제1 추진 주체는 베를린 3자 회담을 주도한 북한 공산정권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중략) 조직소위, 재정소위, 정책소위 등의 소위원회는 사실상 재야운동권의 친북성향 인사들이 실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주사와 계열에 의해 장악돼 있는 실정이다. (중략) 범민련은 겉으로는 남북합의서 이행등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슬로건을 내걸고 실제로는 반전, 반핵, 미군철수 등과 연방제 통일을 위한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지지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지난 90년 9월 15일자 전민련 신문에 실린 범민족추진본부의 범민족대회 평가서에도 남·북한

해외를 망라한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적 단결의 사상 및 조직적 조건 마련 등 5개항을 명시 김일성이 주장해 온 민족통일전선의 추종세력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총 7단 137행에 걸쳐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서울신문에 공표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라고 약칭한다) 남측본부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모임일 뿐 독립된 조직이 아니고, 대표자의 선임, 총회의 운영방법,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 등이 정관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현재 구성원은 신청인 이○○ 혼자 뿐이므로 위 신청인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신청인 위원회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으므로 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대표자 강○○은 위 신청인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신청인 이관복은 위 기사에서 거명되지 않았고 본건 기사에 의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신청인은 본건 기사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신청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이하 신청인 위원회라고 약칭한다)가 정정보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소갑제3호증(내규), 소갑제5호증, 소을제2호증(각 판결), 소갑제6호증의 1(범민련결성 베를린 3자회담 관련 자료집 표지), 2(범민련결성 베를린 3자실무회담까지의 경과과정), 소을제1호증(조국통일범민족연합 규약초안)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1990. 8. 15. 판문점에서 범민족대회 북측 추진본부측과 해외본부측이 남·북 해외연대 공동투쟁체로서 소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결성하자고 합의한 후, 1990. 11. 19. 베를린에서 개최된 베를린 3자 회담에서 통일운동체의 명칭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으로 결정되고, 그 지역조직으로서 남·북 해외 본부를 각 구성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신청외 이창복등 40인은 1991. 1. 말까지 범민련 남측본부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후, 1991. 1. 23. 위 신청인 이○○ 등 60명이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내규(위 소갑제3호증)를 채택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신청외 문○○을, 부위원장으로 신청외 계훈제등 5명을, 준비위원으로 신청인 이○○ 등 144명을, 실행위원장으로 위○○을, 실행위원으로 위○○ 등 12인을 각 선출한 사실, 위 소갑제3호증 내규는 「준비위원회는 남측본부의 결성을 마칠 때까지 준비과정에서 업

무상 원환을 기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 총회에서 구성한 실행위원회가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실행위원회는 총회의 결의사항과 제반업무를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준비위원회는 1991. 2. 8. 남측본부를 결성한다. 준비위원회에 정책소위, 조직소위, 재정소위를 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법인 사단이란 계속성이 있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그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과 대표자 및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 등이 사단 규약등으로 정해져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 위원회는 1991. 1. 23.자 모임에서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문익환을 선출한 다음 위 내규(소갑제3호증)를 채택하였으나, 그 내용은 1991. 2. 8. 범민련 남측본부를 결성한다는 한시적인 목적으로, 위 남측본부 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방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준비위원회에 계속성이 있는 목적이 있다든지 총회의 운영이나 대표자의 선임방법에 관한 규약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신청인 위원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정정보도청구권의 재판상 행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가치분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신속, 엄정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당사자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비록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정보도게재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소갑제4호증의 1, 2(회의록 표지 및 내용), 소갑제5호증(판결), 소을제3호증의 2, 6, 13, 14(각 유인물)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 위원회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1991. 2. 8. 범민련 남측본부를 결성하지 못하고 위원장 문 이 구속되자 1991. 6. 29. 69명이 모여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강 을 선출하는 등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 위원회는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로서 정정보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1991. 6. 29.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된 강 은 신청인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 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 위원회가 당사자 능력이 없거나 강 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신청인 이 이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정의 피해자인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에서 말하는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

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사에서 위 신청인이 직접 지명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민련 남측본부결성 준비위원회에는 조직소위, 재정소위, 정책소위 등 소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는 사실상 주사파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는 실정이다」고 보도되었고, 한편 소갑제5호증(판결)의 기재에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청인은 1991. 1. 25. 위 재정소위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신청인은 위 보도내용등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신청인은 위 법 소정의 피해자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신청인들이 구하는 이 사건 정정보도에 관하여 살펴건대, 신청인들은 첫째 위 기사 중 「범민족대회를 위한 범민련의 제1추진 주체는 베를린 3자 회담을 주도한 북한 공산정권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보도한 부분에 관하여 「범민련은 남한측의 민간통일운동 진영이 북한과 해외동포들에게 그 결성을 제의하고 북한과 해외 동포들이 그 제의를 받아들여 1990. 7. 남·북 해외 3자 실무회담을 열고 1990. 8. 15. 제1차 범민족대회를 열게 된 것이므로 베를린 회담을 주도한 측과 범민련의 제1추진 주체도 남한의 민간운동 진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인데, 위 기사 부분은 그 앞에서 「범민련은 지난 90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범민족대회> 개최를 이룬바 범민족통일운동을 벌인다고 남·북한 및 해외 인사 9명이 이룬바 <3자 회담>을 갖고 태동시킨 단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합의에 따라 북한의 이룬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부위원장 윤 을 본부장으로 하는 북측본부와 재독교포 윤 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외본부>가 지난해 1월 결성되었으며 이들과 함께 결성하려던 <남측본부>는 등 추진 세력의 핵심인사들이 구속되는 바람에 <준비위원회>만 발족시켜 문 씨를 위원장으로 뽑았으나 문씨 또한 구속돼 강 씨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삼아 활동해 오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따라서 범민족대회를 위한 범민련의 제1추진 주체는 베를린 3자 회담을 주도한 북한 공산정권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위 범민련의 제1추진주체에 관한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 내지는 의견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기사에 관한 신청인들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

다음으로, 위 기사 중 「조직소위, 재정소위, 정책소위 등의 소위원회는 사실상 재야운동권의 친북성향 인사들이 실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주사파계열에 의해 장악돼 있는 실정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신청인들은 「범민련 남측준비위원회에는 3개 소위가 있는데 3개 소위에 관련된 사람들 중 친북성향의 주사파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으며, 특히 재정소위 위원장인 신청인 이○○은 고등공민학교 국어교사로 7년 4개월, 대명중학교장으로 13년을 근무하는 등 교직에 몸 담고 있었고 제3공화국 시절부터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민주투쟁을 하다가 투옥된 적도 있는 바, 친북성향 주사파 계열에 속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구하는 위 정정보도문은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소갑제5호증, 소을제2호증(각 판결), 소을제5호증의 1, 2(각 책자)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 등 신청인 위원회 구성원들은 동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재판에서, 위 신청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남 적화 선전, 선동 전략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신청인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신청인 이○○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신청의○○○○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3개 소위에 관련된 사람들 중 친북성향의 주사파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는 부분과 「신청인○○○○이 친북성향 주사파 계열에 속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는 부분은 그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여 이부분 정정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신청인○○○○이 고등공민학교 국어교사로 7년 4개월, 대명중학교장으로 13년을 근무하는 등 교직에 몸담고 있었고 제3공화국 시절부터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민주투쟁을 하다가 투옥된 적도 있다」는 부분은 신청인○○○○의 과거 경력에 관한 내용으로서 위 기사 및 정정보도문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에 관하여서는 위 신청인이 그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기사 중 「범민련은 겉으로는 남북합의서 이행동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슬로건을 내걸고 실제로는 반전, 반핵, 미군철수 등과 연방제 통일을 위한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지지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지난 1990.

9. 15.자 전민련 신문에 실린 범민족추진본부의 범민족대회 평가서에도 남·북한 해외를 망라한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적 단결의 사상 및 조직적 조건 마련등 5개항을 명시 김일성이 주장해 온 민족통일전선의 추종세력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신청인들은 「범민련에서 반전, 반핵,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통일의 전단계로서 평화정착을 통하여 민족끼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 뿐이고, 범민련이 주장하는 연방제도 북한의 고려연방제와는 그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즉 범민련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1국가 2체제라고 한다면, 고려연방제는 1국가 2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민련은 북한의 입장과 다른 순수한 민간통일운동단체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남적화노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 또한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 위원회는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남 적화 선전, 선동 전략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로 인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범민련에서 반전, 반핵,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통일의 전단계로서 평화정착을 통하여 민족끼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 뿐이고, 범민련은 북한의 입장과 다른 순수한 민간통일운동단체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남적화노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범민련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1국가 2체제라고 한다면, 고려연방제는 1국가 2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북한과 범민련의 노선 중 일부 차이가 있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위 기사 및 정정보도문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정정보도에 관하여서는 신청인들이 그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들인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26.

재판장 판사 정 지 형
 판사 이 태 섭
 판사 이 광 만

별지 (정정보도문)

제목 : 범민련 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소제목 1 : 「범민련이 국내외 망라한 북의 주사추종 집단」은 오보

소제목 2 :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에 따라」

내용 : 본보는 지난 6. 27. 발행한 14728호 18면 좌측 상단 기사로 『국내외 망라한 북의 주사추종 집단』이라는 제목 아래 범민족대회를 위한 범민련의 제1추진 주체는 베를린 3자 회담을 주도한 북한 공산정권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조직소위, 재정소위, 정책소위 등의 소위원회는 사실상 재야운동권의 친북성향 인사들이 실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주사파 계열에 의해 장악돼 있는 실정이다. 범민련은 겉으로는 남북합의서 이행등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슬로건을 내걸고 실제로는 반전, 반핵, 미군철수 등과 연방제 통일을 위한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지지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지난 1990. 9. 15.자 전민련 신문에 실린 범민족 추진본부의 범민족대회 평가서에도 남·북한 해외를 망라한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적 단결의 사상 및 조직적 조건 마련등 5개항을 명시 김일성이 주장해 온 민족통일전선의 추종세력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범민련은 남한측의 민간통일운동진영이 북한과 해외동포들에게 그 결성을 제의하고 북한과 해외 동포들이 그 제의를 받아들여 1990. 7. 남·북 해외 3자 실무회담을 열고, 1990. 8. 15. 제1차 범민족 대회를 열게 된 것이므로 베를린 회담을 주도한 측과 범민련의 제1 추진 주체도 남한의 민간운동진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민련 남측준비위원회에는 3개 소위가 있는데 3개 소위에 관련된 사람들 중 친북성향의 주사파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으며, 특히 재정소위 위원장인 신청인이 은 고등공민학교 국어교사로 7년 4개월, 대명중학교장으로 13년을 근무하는 등 교직에 몸담고 있었고 제3공화국 시절부터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민주투쟁을 하다가 투옥된 적도 있는 바, 친북성향 주사파 계열에 속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 또한 범민련에서 반전, 반핵,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통일의 전단계로서 평화정착을 통하여 민족끼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 뿐이고, 범민련이 주장하는 연방제도 북한의 고려연방제와는 그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즉 범민련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1국가 2체제라고 한다면, 고려연방제는 1국가 2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민련은 북한의 입장과 다른 순수한 민간통일운동단체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남적화노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본지가 범민련에 대하여 게재한 기사는 잘못된 보도이므로 바로 잡는다. 범민련 남측준비위원회와 재정소위 위원장 은 1992. 6.27.자 보도내용에 대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신청을 하였는데 동 법원의 인용판결에 의하여 본 기사를 싣는다.

정정보도 신청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